

알기쉬운 중국의 통상규제 법령해설

Part 1. 중국의 통상규제 법령
Part 2. 미·중 양국의 통상규제 비교
Part 3. 참고자료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2021.5

알기쉬운
중국의 통상규제 법령 해설

2021.5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알기 쉬운 중국의 통상규제 법령 해설』 을 발간하며

지난해부터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19로 인해 아직까지 우리 모두는 사회·경제적으로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글로벌 경제 위축과 자유로운 이동의 제한 속에서도, 우리 기업인들이 저력을 발휘해 주신 덕분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반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코로나19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통상환경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핵심 교역 대상 국가의 제도를 신속하고 정확히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역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주요국은 국가안보 보호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역·통상 관련 제도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기존의 〈대외무역법〉, 〈외상투자법〉 등에서 규정하던 통상규제를 유지하면서 글로벌 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여 기존 통상규제의 절차와 내용을 보완하고 세부내용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까지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 통상규제 법령의 주요 내용에 대한

우리 기업인들의 이해를 돕고자 『알기 쉬운 중국의 통상규제 법령 해설』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책자는 인쇄본으로 제작되어 우리 기업 및 유관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며, 주중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여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중국과 교역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무역 활동을 유지하는 한편, 중국 내수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되는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주중한국대사관은 우리기업들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알기 쉬운 중국의 통상규제 법령 해설』 발간에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5월
대한민국 주중국대사 장 하 성

Contents

Part 1. 중국의 통상규제 법령

1. 기존 통상규제 법령.....	2
2. 수출통제법.....	8
3. 중국 수출 제한·금지 기술 목록.....	19
4. 외상투자안전심사방법.....	23
5.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 규정.....	29
6. 외국 법률·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저지 방법.....	32

Part 2. 미·중 양국의 통상규제 비교

1. 미국의 통상규제 법령.....	42
2. 미·중 양국의 통상규제 법령 비교.....	46

Part 3. 참고자료

1. 기존 통상규제 법령 관련 조항(원문).....	49
2. 수출통제법(원문, 번역문).....	81
3. 중국 수출 제한·금지 기술 목록(원문, 번역문).....	92
4. 외상투자안전심사방법(원문, 번역문).....	110
5.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 규정(원문, 번역문).....	115
6. 외국 법률·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저지 방법(원문, 번역문).....	118

Part 1

중국의 통상규제 법령

기존 통상규제 법령 /

수출통제법 /

중국 수출 제한·금지 기술 목록 /

외상투자안전심사방법 /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 규정/

외국 법률·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저지 방법

1. 기존 통상규제 법령

가. < 대외무역법 >(2016. 11. 7 개정,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1) 개관

<대외무역법>은 1994년에 최초로 제정된 이후 2004년 및 2016년에 개정된 중국의 무역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대외무역 및 이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적용된다(同 제2조). 동 법은 “어떤 국가나 지역이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해 무역과 관련된 차별적인 금지, 제한 및 기타 유사조치를 취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은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 상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同 제7조).”는 규정을 통해 무역보호에 대한 일반원칙을 정의하고 있다.

또한 <대외무역법>은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GATS(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일반적 예외’ 및 ‘안보상의 예외’ 규정¹을 참조함으로써, WTO 규칙을 국내법 규정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수출입 제한 또는 금지의 범위를 규정하였다.

최근 제정된 중국의 통상 규제 관련 법령들은 <대외무역법>을 기반으로 하여 세부적인 내용들을 구체화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상품과 기술의 수출입 제한 조치 (일반적 예외)

<대외무역법>은 법률 및 행정법규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상품과 기술의 자유로운 수출입을 허용하고 있으며(同 제14조), 일반적 예외조항을 두어 아래와 같은 경우 관련 상품, 기술의 수입 또는 수출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同 제16조).

① 국가 안전, 사회의 공공이익 또는 공중도덕을 수호하기 위하여 수출이

1 GATT 제 20 조 및 제 21 조, GATS 제 14 조 및 제 14 조의 2 에 따라, 동 협정을 국내에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 (상품무역과 서비스무역 간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인 예외로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인간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법률 또는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 등이 있고, 안보상의 예외로 안보이익에 반하는 정보 제공 거절을 위한 조치, 핵분열성 물질 관련 조치, 전시 또는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비상시에 취하는 조치 등이 있음.

나 수입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

- ② 인류의 건강이나 안전보호, 동식물의 생명이나 건강보호, 환경 보호를 위하여 수입이나 수출을 제한 또는 금지해야 하는 경우
- ③ 황금 또는 은의 수출입과 관련된 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입 또는 수출 제한이 필요한 경우
- ④ 국내 공급이 부족하거나 국내 자원의 고갈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수출제한이 필요한 경우
- ⑤ 수출대상 국가나 지역의 시장물량의 한계로 수출제한이 필요한 경우
- ⑥ 수출경영질서의 심각한 혼란으로 인해 수출제한이 필요한 경우
- ⑦ 국내 특정산업의 육성 또는 육성의 가속화를 위해 수입제한이 필요한 경우
- ⑧ 어떠한 형식으로는 농업, 목축업, 어업 제품에 대한 수입제한이 필요한 경우
- ⑨ 국가의 국제금융에서의 위상과 국제수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수입 제한이 필요한 경우
- ⑩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해 수출이나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할 기타 경우
- ⑪ 중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 협정에 의해 수출이나 수입제한이 필요한 기타 경우

3) 핵 관련 물질에 대한 수출입 제한 (안보상의 예외)

〈대외무역법〉은 안보상의 예외로 i) 핵분열, 핵반응물질 또는 이러한 물질을 파생하는 물질과 관련된 상품 및 기술과 관련된 수출입, ii) 무기, 탄약 또는 기타 군용물자와 관련된 수출입 또는 iii) 전시 또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경우에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同 제17조).

4) 수출입 제한 또는 금지 리스트

중국 상무부는 국무원 관련 부처와 협동하여 〈대외무역법〉 제16조 및 제17조가 규정한 범위 내에서 수출입 화물 및 기술의 제한 또는 금지 리스트를 제정, 조정 및 공표한다(同 제18조 제1항).

이러한 리스트는 중국 상무부에서 수시로 조정 및 공표하며, 주요 리스트로는 <수입금지 상품 리스트(2021년)>, <수출금지 상품 리스트(2021년)>, <수입허가증 관리상품 리스트(2021년)>, <수출허가증 관리상품 리스트(2021년)>, <수입 제한금지 기술 리스트(2007년)> 및 <수출 제한금지 기술 리스트(2020년)> 등이 있다.

또한, 중국 상무부는 수출입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자유 수출입 상품에 대해서도 자동 수출입 허가 제도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리스트를 공표한다(同 제15조 제1항). 이와 관련된 리스트는 <자동수입허가 관리 상품 리스트(2020년)>가 있다.

5) 추가적인 제품의 수출입 제한

중국 상무부는 국무원의 비준을 받은 후 국무원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대외무역법> 제16조와 제17조가 규정한 범위 내에서, 이들 조항에 따라 제정된 리스트 이외의 특정 상품 및 기술의 수입이나 수출을 임시로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同 제18조 제2항).

6) 서비스무역의 제한

<대외무역법>은 일반적 예외로, 아래와 같은 경우 관련 국제서비스 무역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同 제26조).

- ① 국가안전, 사회공공이익, 공중도덕의 수호를 위하여 제한 또는 금지해야 할 경우
- ② 인류의 건강 또는 안전 보호, 동물,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보호, 환경 보호를 위하여 제한 또는 금지해야 할 경우
- ③ 국내 특정 서비스산업의 육성 또는 육성의 가속화를 위하여 제한 또는 금지해야 할 경우
- ④ 국가의 외환수지 균형 유지를 위하여 제한 또는 금지해야 할 경우
- ⑤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해 제한 또는 금지해야 할 기타 경우
- ⑥ 중국이 체결하거나 참가한 국제조약, 협정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한 또는 금지해야 할 기타 경우

또한, <대외무역법>은 안보상의 예외로, 핵분열, 핵반응물질 또는 이런 물질을 파생하는 물질과 관련된 국제서비스 무역의 수출입 또는 국가안전과 국제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것일 경우에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同 제27조).

7) 수출입 제한 방식

중국은 수입이나 수출을 제한하는 상품에 대해 쿼터, 허가증 등 방식을 실시하여 관리하고, 수입이나 수출을 제한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허가증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쿼터, 허가증 관리를 실시하는 상품, 기술은 국무원 규정에 따라 상무부 또는 동 부처와 국무원 관련 부처의 허가를 받은 후에 수입이나 수출이 가능하고,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쿼터 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同 제19조).

나. <외상투자법>(2020. 1. 1 시행,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1) 외국인 투자의 기본 요건

2019. 3. 15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2020. 1. 1일부터 시행된 <외상투자법>은 기존의 외자3법(<중외합자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을 통합한, 외국인 투자의 전반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이다.

동 법률은 중국 경내에서 투자 활동을 하는 외국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기업은 중국의 법률,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중국의 국가안전을 침해하거나 사회공공이익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외국인투자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同 제6조).

2) 외국인 투자의 수용²

² 여기서의 '수용'은 타인의 뜻을 받아들이다는 의미가 아닌, 정부 기관에서 권한을 사용해 타인의권리 등을 거두어들여 사용한다는 행정법상 의미 (영어로는 expropriation)이다.

외국인투자자의 투자는 원칙적으로 수용을 하지 않으나, 특수한 상황에서 사회공공이익의 수요와 법률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에 대해 수용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수용은 법정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적시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同 제20조).

3) 외국인 투자자의 경영활동

외국인 투자기업은 생산경영활동을 진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률, 행정법규와 중국 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 납부, 회계, 외환 등의 사항을 처리하고 관련 주관부서가 실시하는 감독 검사를 받아야 한다(同 제32조).

4) 외국인 투자의 안전심사

국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안전심사제도³를 수립하여 국가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안전심사를 실시하며, 법에 따라 내린 안전심사결정은 최종 결정에 해당한다(同 제35조). 최근 제정된 <외상투자안전심사방법>은 동 규정을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⁴

다. 형사책임 등 문제

<대외무역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련 무역활동 종사 금지, 불법소득 몰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대외무역법 제61조, 제62조).

또한 위와 같은 법령들을 위반하여 그 상황이 엄중한 경우에는, 중국 <형법>의 국가안전위해죄(危害國家安全罪) 혹은 밀수죄(走私罪), 시장질서교란죄(扰乱市场秩序罪)로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

먼저, 문제되는 물품이나 기술이 국가기밀인 경우에는 '국가안전위해죄' 중 국가배반죄(背叛國家罪, 同 제102조), 간첩죄(間諜罪, 同 제110조), 국가기밀절취 등죄(為境外竊取、刺探、收買、非法提供國家秘密、情報罪, 同 제111조) 등이 문제될

3 어떠한 외국인 투자가 국가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국가가 해당 거래를 중지시키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함.

4 구체적인 내용은 4. <외상투자 안전심사방법> 부분 참조

수 있다.

또한 무기, 탄약, 핵 자재 혹은 위조화폐를 밀수한 경우는 무기탄약밀수죄(走私武器、弹药罪, 同 제151조 전단), 핵자재밀수죄(走私核材料罪, 同 제151조 전단), 위조화폐밀수죄(走私假币罪, 同 제151조 전단), 국가가 금지한 물품을 수출입한 경우에는 국가 금지품목 수출입밀수죄(走私国家禁止进出口的货物、物品罪, 同 제151조 후단), 이 외의 일반 상품, 물품 등을 밀수한 경우는 일반상품물품 밀수죄(走私普通货物、物品罪, 同 제153조) 등 '밀수죄'가 문제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장질서교란죄'도 문제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규정을 위반하여 규정된 허가를 받지 않고 통제물품을 거래했을 경우, 수출입 허가증과 수출입원산지 증명 및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경영 허가증과 비준문서를 매매했을 경우에는 불법경영죄(非法经营罪, 同 제225조)가 문제될 것으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라. 시사점

중국은 <대외무역법> 및 <외상투자법> 등 수입, 수출 및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통상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를 이미 갖추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중간 무역분쟁이 심화되고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강화되면서, 중국도 이에 대응하여 무역, 통상 분야에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법령의 토대에서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여 통상규제의 내용을 명확화하고 세부내용을 보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중국 정부가 최근 제정한 통상규제 법령을 다음 항목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수출통제법 (2020.12.1 시행, 중화인민공화국주석령)

1) 입법 취지 및 배경

〈수출통제법〉 제정 이전 중국 정부는 〈대외무역법〉, 〈해관법〉, 〈형법〉 등의 법률과 〈군수품 수출관리조례〉, 〈핵 수출통제조례〉 등의 행정 조례⁵ 등을 통해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규 제정후 오랜 시간이 경과되어 수출통제 관련 환경의 변화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고, 수출통제 관련 상위법의 부족, 법적 체계 불완전 등의 문제점 등도 함께 존재하였다.

이에 중국은 2020년 10월 17일 전국인민대표 상무위원회(이하 “전인대”)에서 수출통제법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 기존에 행정조례로 관리되어 오던 수출통제 제도를 통합하고 입법 단계를 높임으로써, 수출통제 업무를 처리하고 법규범의 미비를 더욱 개선하고자 하였다. 다만 기존 행정조례는 여전히 유효하며, 기존 행정조례에 따라 수출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품목은 아래 리스트에 규정되어 있다.

분야	관리 리스트 및 목차
일반 화물	수출 금지 화물 리스트 ⁶
기술	수출금지 수출제한 기술 리스트 ⁷
민군 양용물자	민군 양용물자 및 기술수출입허가증 관리 리스트 ⁸
군수품	군수품 수출 관리 리스트 ⁹
핵 물품	핵 물품 수출 통제 리스트 ¹⁰
	핵 민군 양용물자 및 관련 기술 수출 통제 리스트 ¹¹

5 대표적인 예로 〈군수품 수출관리조례〉, 〈생물 이중용도 물품 및 관련설비와 기술 수출통제조례〉, 〈핵 수출통제조례〉, 〈핵 이중용도 물품 및 관련기술 수출통제조례〉, 〈감독통제 대상 화학품 관리조례〉 등이 있다.

6 <https://www.qgtong.com/cxgj/cwmgznl/200910/8205.html>

7 <http://www.mofcom.gov.cn/article/b/xfb/202008/20200802996641.shtml>

8 <http://www.mofcom.gov.cn/article/b/e/201912/20191202927099.shtml>

9 <https://www.customslawyer.cn/index.php/portal/fgk/detail/id/29006.html>

10 <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302266/302267/2044580/index.html>

11 <http://images.mofcom.gov.cn/aqygzi/201505/20150518112335983.pdf>

미사일	미사일 및 관련 물품 및 기술 수출 통제 리스트 ¹²
생물 기술	생물 기술 민간 양용물자 및 관련 설비 및 기술 수출 통제 리스트 ¹³
화학품	관련 화학품 및 관련 설비 및 기술수출 통제 리스트 ¹⁴
	화학품 모니터링 관리 조례 리스트 ¹⁵
	전구화학물질 수출입 관리 리스트 ¹⁶

2) 구성

〈수출통제법〉은 아래와 같이 총 5장, 49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

제2장 통제정책, 통제리스트 및 통제조치

- 제1절: 일반규정
- 제2절: 이중용도(군용과 민용 겸용) 물품, 수출관리
- 제3절: 군수품 수출관리

제3장 감독관리

제4장 법률책임

제5장 부칙

3) 주요 내용

가) 수출 통제의 주요 주체

〈수출통제법〉의 시행과 관련된 모든 실무(제정, 허가 등)는 국가 수출통제

12 http://www.gov.cn/gongbao/content/2002/content_61742.htm

13 http://www.gov.cn/gongbao/content/2002/content_61806.htm

14 http://www.gov.cn/gongbao/content/2003/content_62656.htm

15 https://www.fmprc.gov.cn/web/wjtb_673085/zbxgkj_674865/gknrtb/tywj/tyqk/t10490_shtml

16 <http://www.mofcom.gov.cn/aarticle/b/c/200609/20060903261114.html>

관리부문(상무부 등 기존에 수출통제 업무를 담당하던 기관들을 지칭함)에서 담당한다.

주로 상무부에서 관리하는 국가 수출통제 관리부문은 수출통제리스트의 제정, 관련 산업의 수출통제지침, 수출자의 수출 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수출국가 및 지역에 대한 위험등급 평가 등을 담당한다.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는 수출통제 정책을 비준하며, 일반사항은 국무원에, 중요사항은 국무원 및 중앙군사위원회에 보고하고 비준을 받는다. (同 제5조,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나) 수출통제 대상

① 이중용도 물품(Dual-use item, 군민 겸용 물품), 군수품, 핵, ② 국가안전과 이익 수호, 확산방지 등 국제적 의무 이행과 관련된 물품, 기술, 서비스 등 제품(이하 통칭하여 “통제 품목”)의 수출 관리 및 제한에 <수출통제법>이 적용된다.

이중용도 물품이란, 민간 용도지만 군사용도 혹은 군사적 잠재력을 상승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물품을 의미하며, 통제 품목에는 물품 관련 기술자료 등 데이터도 포함된다(同 제2조).

다) 수출통제의 범위 (同 제 2 조, 제 45 조)

아래 행위들은 동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 ① 중국내에서 국외로 통제 품목을 이동시키는 것
- ② 중국 국민, 법인과 비법인 조직이 외국의 조직과 개인에게 통제 품목을 제공하는 것
- ③ 통제 품목의 국경 통과, 중계 수송, 통과 수송, 재수출 또는 해관특수관리구역(보세구 및 수출가공구 등)이나 보세관리 장소(수출관리 창고, 보세물류센터 등)로부터 국외로의 수출

라) 역외 적용

외국인과 외국 조직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중국의 국가안전과 이익에 위

해를 줄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하며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同 제44조). 역외적용과 관련된 동 조항은 <수출통제법>의 3차 심의안에 처음 포함된 내용으로, 중국내에 투자한 외국 기업이나 한국에 본사를 둔 우리 기업의 중국 지사도 동 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현재 중국의 국가안전과 이익에 위해를 준다는 규정의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향후 실무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출통제법>은 수출 통제 업무는 총체적인 국가안전관(国家安全观)을 견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同 제3조)에 따라 많은 영역에서 수출 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총체적인 국가안전관이란 2015년 국가안전법 제정과 함께 확립된 개념으로 국방 등 전통적인 안보 개념에서 확장하여 정치, 국토, 경제, 문화, 사회, 과학 기술, 정보, 생태, 자원, 핵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마) 수출통제 관리 방식

(1) 수출통제 리스트

국가는 통일된 수출통제 제도를 시행하고, 수출통제리스트를 작성하여 관리한다(同 제4조). 또한 국무원(및 중앙군사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수출통제 리스트 이외의 물품, 기술, 서비스에 대해 2년 이내의 임시 통제를 실시할 수 있다(同 제9조).

(2) 특정 국가나 지역으로의 수출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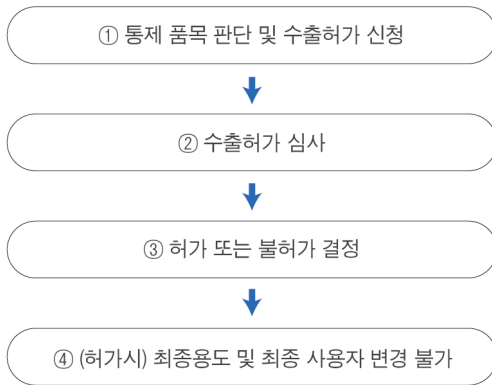
국가안전과 이익 수호, 국제적인 의무의 이행 필요에 따라 국가 수출통제 관리부문은 수출통제물품의 수출금지 또는 관련 통제 물품이 특정 국가나 지역, 개인에게 수출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同 제10조).

(3) 수입상 또는 최종 사용자 관리

아울러 국가 수출통제 관리부문은 국가안전과 이익의 위협 가능성, 테러위협, 최종 용도 관리요구를 위반한 수입상이나 최종사용자에 대한 관리, 통제 명단을 작성하고, 이들에 대한 관련 통제 품목 거래를 금지, 제한할 수 있다(同 제18조).

상기 명단은 미국이 자국의 수출관리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수출관리규정 (E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상의 거래제한리스트(Entity List), 이른바 블랙리스트와 유사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 수출업자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상기 명단상의 수입상 또는 최종사용자와 거래가 필요한 경우 수출통제 관리부문에 수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바) 수출 허가 절차



① 통제 품목 판단 및 수출허가 신청

중국 기업(중국 내 외상투자기업 포함)은 수출통제리스트상의 품목 및 임시 통제 리스트 품목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을 수출하고자 할 경우 국가 수출통제 관리부문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수출업자는 수출하려는 물품, 기술 및 서비스가 본 법 규정의 통제 품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 국가 수출통제 관리부문에 자문을 구하고, 국가 수출통제 관리부문은 적시에 답변해야 한다(同 제12조).

수출업자는 국가 수출통제 관리부문에 수출 품목의 최종 사용자와 최종 용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증명 문서는 최종 사용자 혹은 최종 용도의 소재 국가와 지역 정부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한다(同 제15조).

② 수출허가 심사

수출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국가수출통제관리부문은 아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를 진행한다(同 제13조).

- (i) 국가의 안전과 이익
- (ii) 국제의무의 대외적 약속
- (iii) 수출유형
- (iv) 통제 품목의 민감 정도
- (v) 수출 목적지 국가 혹은 지역
- (vi) 최종 사용자와 최종 용도
- (vii) 수출경영자의 관련 신용 기록
- (viii)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요소

이 법의 제정 과정에서 ‘국가 이익’이라는 부분이 새로 부각되었다. 국가수출통제 관리부문이 국가안전(국가안보)과 국가이익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으나, 최근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대중국 수출통제를 강화한 맥락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의 대외관계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동법의 적용 동향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

③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

국가 수출통제 관리부문은 상기 요건들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허가 또는 불허가를 결정한다. 수출이 허가될 경우 수출물품의 발송인 혹은 대리 통관업체는 통제 품목의 수출을 위해 해관에 국가 수출통제 관리부문에서 발급한 허가증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고,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통관 수속을 진행할 수 있다(同 제19조).

④ (허가시) 최종용도 및 최종 사용자 변경 불가

수출 허가시 통제 품목의 최종 사용자는 임의로 관련 품목의 최종 용도를 변경해서는 아니되며, 어떠한 제3자에게도 이를 양도해서는 안된다. 수출업자, 수입상은 최종 사용자 또는 최종 용도가 변경된 것을 발견한 경우 즉시 규정에 따라 국가 수출통제 관리부문에 보고해야 한다(同 제16조).

사) 캐치올 (catch-all) 의무

수출업자는 통제대상 이외의 물품, 기술, 서비스에 대해서도 아래 위험이 있음을 알거나 마땅히 알았어야 하는 경우에는 수출허가를 신청해야 하는데, 이를 수출통제 분야에서 캐치올(Catch-all) 의무라고 칭한다. 또한 수출업자는 국가 수출통제 관리부문의 통지로 아래의 위험이 있음을 알게될 경우 국가 수출통제 관리부문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同 제12조).

- ① 국가안전과 이익에 위협이 되는 경우
- ② 대규모 살상 무기 및 무기 운송 등에 사용되는 경우
- ③ 테러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아) 금지 행위

(1) 불법 수출에 대한 서비스 제공 금지

그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수출업자의 수출통제 위반행위에 대해 수출대리, 물품운송, 택배, 통관수송, 제3자 전자상거래, 금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아니된다(同 제20조).

(2) 국가 안전과 이익에 유해한 자료 불법 제공 금지

중국 내의 조직이나 개인이 국경 외부로 수출통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허가 등을 거쳐야 하며, 국가 안전과 이익에 유해한 자료를 제공해서는 아니된다(同 제32조). 따라서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중국법인이 한국 본사에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수출통제 관련 조항 해당 여부에 대해 사전 점검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기 조항들은 <수출통제법>의 1~3차 심의 과정에서 신규로 추가된 내용들로서 우리 기업들은 내부자료 제공 등 관련 활동을 함에 있어 의도하지 않게 법규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자) 위법 행위 심사 및 처벌

<수출통제법> 규정에 대한 위반 의심 행위가 있는 경우, 조직과 개인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국가 수출통제 관리부문에 신고할 수 있으며, 관리부문은 신고

를 받은후 법에 따라 처리한다.

(1) 국가 수출통제 관리부문의 감독, 검사, 관리사항

국가 수출통제 관리부문을 수출통제 관련 조사를 위해 아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同 제28조, 제31조).

- ① 피조사자의 영업장소 및 관련 장소에 대한 조사
- ② 피조사자, 이해관계자 및 기타 관련조직, 개인에 대한 설명 요구
- ③ 피조사자, 이해관계자 및 기타 관련조직, 개인의 관련 서류, 계약, 회계장부 및 업무서신 등 자료의 열람 및 복제
- ④ 수출에 사용된 운송수단 검사, 선적 중지, 불법적 수출품에 대한 송환 명령
- ⑤ 사건에 연루된 물품에 대한 봉인, 압류, 피조사자의 은행계좌 조회 (단, 동 행위들의 경우 국가수출통제관리부문 담당자의 서면 비준 필요)

(2)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수출통제법〉의 조항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대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수출업자는 벌금이나 수출자격 취소, 평생 수출행위 금지 등의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국가 수출통제 관리부문을 수출업자의 위법행위를 신용기록으로 남기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안전과 이익에 해를 끼치는 경우 동 법에 따른 처분 외에 관련 법률이나 행정 법규에 따른 가중 처분이 가능하다. (同 제33-44 조)

〈수출통제법〉은 기존 관련법에 의거한 처벌에 비해 보다 무거운 처벌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위법행위 종류	처벌 내용
수출업자가 통제물품 수출경영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수출업무에 종사할경우(同 제33조)	경고, 위법행위 정지 명령, 위법소득 몰수 위법경영액 50만원 이상: 액수의 5~10배 벌금 위법경영액 0~50만원 미만: 50만~500만원 벌금
허가 없이 통제물품 수출, 허가 범위를 넘은 수출, 수출을 금지한 물품을 수출(同 제34조)	위법행위 중지 명령, 위법소득 몰수 위법경영액 50만원 이상: 액수의 5~10배 벌금 위법경영액 0~50만원 미만: 50만~500만원 벌금 상황이 엄중할 경우 업무정지, 수출허가 취소

사기, 뇌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수출허가 취득, 비합법적 양도 (동 제35조)	허가증 철회, 수출허가증 몰수, 위법소득 몰수 위법경영액 20만원 이상: 액수의 5~10배 벌금 위법경영액 0~20만원 미만: 20만~200만원 벌금
수출허가증 위조, 변조, 매매 (동 제35조)	위법소득 몰수 위법경영액 5만원 이상: 액수의 5~10배 벌금 위법경영액 0~5만원 미만: 5만~50만원 벌금
수출업자의 위법행위를 알면서도 수출 대리, 물품 운송, 택배, 통관, 전자상거래플랫폼 운영, 금융 등 서비스 제공(동 제36조)	경고, 위법행위 중지, 위법소득 몰수 위법경영액 10만원 이상: 액수의 3~5배 벌금 위법경영액 0~10만원 미만: 10만~50만원 벌금
수출업자가 관리명단에 열거된 수입상 및 최종사용자와 거래 (동 제37조)	부문의 경고, 위법행위 중지, 위법소득 몰수 위법경영액 50만원 이상: 액수의 10~20배 벌금 위법경영액 0~50만원 미만: 50만~500만원 벌금 상황이 엄중할 경우 업무정지 및 수출자격 취소

차) 보복 조치에 대한 근거

어떠한 국가 또는 지역이 수출통제 조치를 남용하여 중국의 안전과 이익에 해를 끼칠 경우 중국은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해당 국가와 지역에 대등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동 제48조).

동 조항은 기존 심의안에는 없었으나 2020년 최종 심의 과정에서 추가된 것으로 향후 제3국의 대중국 기업 제재 등 관련 조치에 대해 중국이 필요한 경우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실무 중 대응 방안

가) 시사점

〈수출통제법〉의 시행으로 중국 수출통제 메커니즘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았다. 기존 수출통제 근거 조례와 메커니즘 등은 모두 유효하다. 다만 중국은 이번 수출통제법을 통해 수출통제 대상의 범위를 물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기술, 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였고, 수출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수출업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국경간 자료 제공, 역의 적용 등 처벌가능 행위와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또한 처벌의 범위와정도도 확대 및 강화되었다.

나) 중국 상무부의 수출통제 리스트 및 관련 지침 발표 동향 파악 필요

우리 기업들은 중국 상무부 또는 국가 수출통제 관리부문이 발표하는 수출 통제 또는 임시통제 리스트, 최종사용자 관리 명단 발표 여부 등 추후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 혹은 거래자가 이에 해당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중국 상무부는 실제 동 범을 시행한 이후 최근 보안칩, 암호화 장치, 암호화 VPN설비, 양자암호설비, 암호분석장비, 소프트웨어 기술 등 암호화 관련 품목 14개를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수출입허가 관리목록'에 추가한 바 있다(2021년 1월 발표)

아직 <수출통제법> 시행령 또는 동법 제5조에서 언급한 수출통제 가이드라인, 제14조에서 언급하는 허가 관리조치의 구체적인 방법 등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이러한 세부 규정들이 발표될 경우 관련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여 이에 따라 실제 허가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상무부가 2020년 9월 19일 발표한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 및 최근 공업정보화부가 초안을 회람하고 의견수렴중인 <회도류 관리 조례> 등 중국 수출통제 제도와 연관될 수 있는 여타 규정과 함께 적용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상기 여타 규정들도 함께 염두에 두고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다) 수출 체계 전반 점검 필요

외상투자기업을 포함한 중국 내 법인 뿐만 아니라 외국의 조직도 <수출통제법>의 적용 대상인바, 중국 소재 우리 기업들은 <수출통제법>에 유의하여 수출 체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앞서 설명했듯 수출 품목이 수출통제 리스트나 임시통제 리스트에 해당되는지 여부, 수출 대상 및 지역이 금지되고 있지는 않는지, 최종사용자 및 최종용도 등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수출통제품목 리스트나 임시품목 리스트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캐치올 의무가 적용될 수 있는 수출 거래에 대해서도 수출허가 신청이 필요하다.

수출 관련 물류, 전자상거래, 금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동 법을 위반하는 수출 거래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닌지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

라) 재중 기업의 한국 본사로의 정보 제공시 유의사항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국법인의 경우 중국 내에서 한국으로 자료를 송부할 때 중국의 국가 안전과 이익에 유해한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에 위반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해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수출통제법〉상 국가 안전의 범주에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과학기술, 생태 등이 총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관련 활동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마) 준법경영 (Compliance) 강화

수출관련 준법경영(compliance) 제도를 수립하고 내부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수출통제법〉 위반 리스크를 감소 또는 방지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수출통제법〉 제5조는 “국가 수출 통제관리부문은 관련업계의 수출관리지침을 공포함으로써, 수출업자가 건전한 수출 관리 내부 compliance 제도를 수립하고 규범적으로 경영하도록 인도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향후 국가 수출 통제관리부문이 수출관리지침을 공포하는 경우, 기업 자체의 compliance 제도 제정 또는 수정시 해당 수출관리지침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바) 유관기관과 상호 협력 필요

〈수출통제법〉 적용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 수출통제 관리부문에 문의할 수 있으며, 관리부문은 이에 답변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다.

아울러, 〈수출통제법〉 상 위반 의심 행위로 신고되어 국가 수출통제 관리부문의 조사를 받거나 위법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유관기관에 연락하여 자문을 요청할 필요도 있다. 현재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의 유관기관은 우리 기업 등이 소재하고 있는 각 관할지 총영사관, 주중 한국대사관(북경)의 기업지원센터(010 8531-0999), 중국 한국 상회(010 8453-9955) 등이다.

3. 중국 수출 제한 · 금지 기술 목록 (2020.8.28, 상무부 및 과학기술부 개정 공고)

1) 입법 취지 및 배경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대외무역법>과 <기술수출입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기존 <중국 수출금지·제한 기술목록>의 내용을 2008년 이후 12년 만에 조정하여 2020년 8월 28일에 발표하였다¹⁷.

2) 주요 내용

가) 기술 목록

2008년 목록의 총 150개 항목(금지 33개, 제한 117개)이 이번 조정을 거쳐 총 164개 항목(금지 항목 4개 삭제, 제한 항목 5개 삭제, 제한 항목 23개 추가)으로 증가하였다.

<기술수출입 관리조례>에 따르면 “기술 수출”은 중국 경내에서 경외로 무역, 투자 혹은 경제기술협작의 방식을 통해 기술을 이전하는 행위를 뜻하고, 특허권 양도, 특허 신청권 양도, 특허실시 허가, 비밀기술 양도, 기술서비스와 기타 방식의 기술이전이 포함된다. 따라서 무역 및 투자 과정에서 기술의 해외 이전이 관련될 경우, 모두 <기술수출입 관리조례>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기술 수출은 그 유형에 따라 자유형, 제한형, 금지형으로 구분되며, 자유형 기술 수출은 사후적으로 계약에 대해 등기비안을 실시하고, 제한형 기술 수출은 등기중 관리 제도를 실시한다. 제한형 기술 수출에 관한 규정은 아래 3)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17 2008년 목록과 2020년 목록의 비교버전은 Part 3, 의 중국 수출 제한 · 금지 기술 목록 번역문참조

나) 세부 조정 내용

2008년 이후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 및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 발전 수준을 고려하여 중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컴퓨터, AI, 바이오, 항공우주, 석유화학, 군사기술, 무인기, 전력설비 등의 분야 기술을 새롭게 수출제한 목록에 포함시키고 기술 요점과 내용을 수정하였다. 아울러, 기술 협력 촉진과 기술의 자유로운 교역을 보장하기 위해 현 시점에서 중국의 산업경쟁력과 안보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분야의 기술 수출, 제한을 완화하였다.

(1)수출금지 기술목록 4개 항목 삭제

-미생물 비료 기술, 카페인 생산 기술, 리보플라빈 생산 공법, 비타민 발효 기술

(2)수출제한 기술목록 5개 항목 삭제

-뉴캐슬병 백신기술, 천연약물 생산 기술, 기능성 고분자 소재의 제조 및 가공 기술, 화학 합성 및 반합성 약물 생산 기술, 정보 보안 방화벽 소프트웨어 기술 등

(3) 수출제한 기술목록 23개 항목 추가

- 유전자 공학, 농업야생식물 인공 번식 기술, 융산양 번식 및 품종배양 기술, 3D 프린터 기술, 공정기계 응용 기술, 공작기계 산업 기초 공통 기술, 대형 고속 풍동 설계 건설 기술, 대형 진동 플랫폼 설계 건설 기술

- 석유 장비 핵심 부품 설계 제조 기술, 대형 석유화학설비 기초 공법 기술, 중형기계업의 전략적 신제품 설계 기술, 해상 산호초 이용 및 안전보장장비 기술, 항공우주 베어링 기술, 무인기 기술, 레이저 기술

- 대형 전력설비 설계 기술, 컴퓨터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암호보안 기술, 고성능 검측 기술, 정보 방어 기술, 정보 대항 기술, 기초 소프트웨어 보안 증강 기술 등)

(3)21개 항목의 기술 요점과 기술 내용 수정

- (금지) 항공기 관측 제어 기술, 공간 데이터 전송기술, 지도 제작기술, 위성 응용 기술 등

- (제한)

① 농작물 번식 기술, 수산 유전물질 번식 기술, 화학원료 생산기술, 생물 농약 생산기술, 생물기술약물 생산기술, 조직공학 의료기기 제품의 제

작 및 가공 기술

- ② 인공 결정체 성장 및 가공 기술, 공간 측정기기 및 설비 제조 기술, 정보 처리 기술(음성합성, AI 인터페이스, 음성평가 측정, 데이터 분석 기반의 개인 맞춤형 정보 푸시 등), 진공 기술 등

3) 수출 제한 기술에 대한 허가증 관리 제도

수출 제한 기술에 대해 허가증 관리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바, 기업이 수출 제한 기술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성(省), 자치구, 직할시 상무 주관부서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무 주관부서는 기술 수출 신청을 접수 받은 후 과학기술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심사하며, 신청 접수일로부터 30 영업일 내에 허가 또는 불허 결정을 내리고, 허가한 경우 '기술수출허가 의향서'를 발급한다. 신청인은 의향서를 발급 받은 후에 대외적으로 실질적인 협상을 진행할 수 있고 기술수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청인이 기술수출계약을 체결한 다음 반드시 '기술수출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상무 주관부서는 기술수출계약의 진실성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 후 관련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5 영업일 내에 기술 수출에 대한 허가 또는 불허 결정을 내리며, 허가를 결정한 경우 '기술수출허가증'을 발급한다. 기술수출계약은 기술수출허가증 발급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중국 수출 제한·금지 기술 목록 요약>

중국 수출 제한 · 금지 기술 목록	
근거규정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중화인민공화국 기술 수출입 관리조례
관리주체	상무부, 과학기술부
적용범위 (목록)	컴퓨터, AI, 바이오, 항공우주, 석유화학, 군사기술, 무인기, 전력설비 등 164개 품목
주요 내용	'기술 수출의 범위: 무역, 투자 혹은 경제기술협력 등을 통한 특허권 양도, 특허 신청권 양도, 특허실시 허가, 비밀기술 양도, 기술서비스 및 기타 방식의 기술이전

4) 실무 중 대응 방안

중국 기업으로부터 기술을 수입하거나 관련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술이 수출금지·제한 기술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해당 기술이 수출금지·제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¹⁸⁾에 공개된 목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08년 목록과 2020년 목록을 구체적으로 비교한 것은 Part.3의 중국 수출 제한금지 기술목록을 참조할 수 있다.

다만, 기술수출 심사 절차 등 기술수출심사 관련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중국 상무부에 직접 문의하거나 중국에 주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유관 기관에 연락하여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18 <http://www.mofcom.gov.cn/article/b/c/200809/20080905801122.html>

4. 외상투자안전심사방법 (2021.1.18 시행, 상무부령)

1) 입법 취지 및 배경

중국 정부는 2011. 2. 3 공포된 <국무원 관공청의 외국투자자의 경내 기업 인수합병 관련 안전심사제도 수립에 관한 통지> 및 2011. 8. 25. 공포된 <상무부의 외국투자자의 경내 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사제도 실시에 관한 규정> 등을 통하여 외국투자자의 중국 경내 기업 인수합병이 국가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거래를 중지시키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안전심사 제도를 시행해 왔다.

이후 2015. 7. 1. 개정된 <국가안전법> 및 2020. 1. 1일부터 시행된 <외상투자법> 등을 통해 안전심사의 적용 대상을 외상투자 전반으로 확대하였고, 이번에 공포된 <외상투자안전심사방법>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였다. <외상투자안전심사방법>은 총 23개 조항으로 되어있다.

2) 주요내용

가) 안전심사 주관부서 (同 제 3 조)

중국은 외상투자 안전심사 업무기구(外商投资安全审查工作机制, 이하 “업무기구”)를 신설하여 외상투자 안전심사 업무를 조직, 조율, 지도한다. 업무기구 사무실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에 설치하고, 발개위와 상무부가 주도하여 외상투자안전심사 업무를 담당한다.

나) 안전심사 적용 범위

(1) 외상투자자의 의의(同제2조)

국가의 안전에 영향을 주거나, 또는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외상투자에 대

해 안전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외상투자는 외국투자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중국 경내에서 진행되는 투자활동을 의미하며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 ① 외국투자자가 단독 또는 기타 투자자와 공동으로 중국 경내의 신규 프로젝트에 투자하거나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 ② 외국투자자가 인수합병의 방식으로 중국 경내 기업의 지분권 또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 ③ 외국투자자가 기타 방식으로 중국 경내에 투자하는 경우

(2) 구체적인 적용범위(同제4조)

아래의 범위(이하 “신고범위”)에 해당하는 외상투자의 경우, 외국투자자 또는 중국 경내의 관련 당사자(이하 “당사자”)는 투자를 실행하기 전에 업무기구에 신고를 해야 한다. 업무기구는 신고범위에 해당하는 외상투자의 경우 당사자에게 신고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① 군수산업, 군수산업 관련 부수산업 등 국방 안전과 관련된 영역에 투자하거나 군사시설 또는 군수산업시설 주변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 ② 국가 안전과 관련된 중요 농산물, 중요 에너지 및 자원, 중대 장비 제조, 중요 기초시설, 중요 운송서비스, 중요 문화제품 및 서비스, 중요 정보기술 및 인터넷제품과 서비스, 중요 금융서비스, 핵심기술 및 기타 중요 분야에 투자하고, 투자한 기업의 실질적 지배권을 취득하는 경우

위②의 “투자한 기업의 실질적 지배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i) 외국투자자가 기업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는 경우
- (ii) 외국투자자가 보유하는 기업의 지분이 50% 미만이나, 그가 보유한 의결권으로 동사회, 주주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 (iii) 외국투자자가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 인사, 재무, 기술 등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경우

다) 안전심사 제출서류 (同제 6 조)

외상투자안전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당사자(투자자)는 업무기구에 (i) 신

청서, (ii) 투자방안, (iii) 외상투자가 국가안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관한 설명, (iv) 업무기구가 지정하는 기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외국투자자의 명칭, 주소, 경영범위, 투자의 기본 상황과 업무기구 사무실이 규정하는 기타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라) 안전심사 절차

안전심사는 초보적인 심사, 일반 심사, 특별 심사로 분류되며, 업무기구는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를 수령한 후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당사자들은 각 심사기간 중에는 투자를 실행할 수 없다.

(1) 초보적인 심사(同제7조)

업무기구는 신고서류를 수령한 날로부터 15 영업일 내에 초보적인 심사를 거친 후 안전심사 진행 여부를 결정하며, 만일 업무기구가 안전심사(즉, 이후의 일반심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투자자는 투자를 실행할 수 있다.

(2) 일반 심사(同제8조)

업무기구가 안전심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경우, 업무기구는 안전심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30 영업일 내에 일반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일반 심사를 거쳐 외상투자가 국가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업무기구는 안전심사통과 결정을 하며, 이 경우 당사자는 투자를 실행할 수 있다.

만일 외상투자가 국가안전에 영향을 주거나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업무기구는 특별심사 개시 결정을 한다.

(3) 특별 심사(同제9조, 12조)

특별 심사는 개시일로부터 60영업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특수한 상황인 경우 심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특별 심사를 거쳐 외상투자가 국가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업무기구는 안전심사 통과를 결정하며, 이 경우 당사자는 투자를 실행할 수 있다.

만일 외상투자가 국가안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지 결정을 하게 된다. 이 경우 당사자는 투자를 실행할 수 없으며, 이미 실행한 경

우에는 기한 내에 지분 또는 자산을 처분해야 하고,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 투자 실행 전의 상태로 복구하여 국가 안전에 대한 영향을 제거해야 한다.

다만 조건부로 국가 안전에 대한 영향을 제거할 수 있고 당사자가 부가 조건을 수락한다는 서면 약속을 하는 경우, 조건부 안전심사 통과를 결정하고, 결정서에 부가 조건을 명시한다. 이 경우 당사자는 조건부 내용을 준수하여 투자를 실행해야 한다.

(4) 기타

업무기구가 안전심사를 진행하는 동안 당사자들은 투자방안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 투자계획을 수정하는 경우 업무기구가 수정된 투자방안을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심사기간을 다시 기산한다(同제11조).

또한 업무기구가 안전심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안전심사 통과결정을내린 후 당사자가 투자계획을 변경하여 국가 안전에 영향을 주거나 줄 수 있는 경우, 당사자들은 다시 외상투자안전심사를 신청해야 한다(同제14조).

마)〈 외상투자안전심사방법 〉 위반시의 제재

(1) 신고 범위에 해당하는 투자임에도 당사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투자를 실행한 경우

업무기구는 투자자에게 기한 내에 신고할 것을 명령한다. 만일 투자자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기한 내에 지분 또는 자산을 처분하도록 명령하고, 투자 실행 전의 상태로 복구하기 위해 필요한 기타 조치(이하 '지분 등 처분 명령 및 기타 조치')를 취한다(同제16조).

(2) 당사자가 업무기구에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보를 은닉하는 경우

업무기구는 시정을 명령하며, 이를 통해 안전심사에 통과한 경우에는 해당 통과 결정을 취소한다. 또한 투자가 이미 실행된 경우에는 지분 등 처분 명령 및 기타 조치를 취한다(同제17조).

(3) 안전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한 당사자가 조건부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업무기구는 시정을 명령하며,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지분 등 처분 명령 및

기타 조치를 취한다(동제18조). 당사자가 위 1)~3)에 해당하는 경우, 경우 중국 국가신용정보시스템에 불량신용자로 등록되며,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를 받을 수 있다(동제19조).

바) 외상투자 안전심사방법 요약

외상투자 안전심사방법	
근거규정	(중국 국무원 관공청 외국투자자의 경내 기업 인수합병 관련 안전심사제도 수립에 관한 통지)(2011.2.) (중국 상무부 외국투자자의 경내 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사제도 실시에 관한 규정)(2011.8.) (국가안전법)(2015.7.) (외상투자법)(2020.1.)
관리주체	상무부, 국가별진개척위원회
적용범위 (목록)	신고 범위에 해당하는 외상투자 ① 군수산업, 군수산업 관련 등 국방 안전과 관련된 영역에 투자 ② 국가 안전과 관련된 중요 농산물, 중요 에너지 및 자원, 중대 장비 제조, 중요 기초시설, 중요 운송서비스, 중요 문화제품 및 서비스, 중요 정보기술 및 인터넷제품과 서비스, 중요 금융서비스, 핵심기술 및 기타 중요 분야에 투자하고, 투자한 기업의 실질적 지배권을 취득하는 경우
주요 내용	국가안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별심사 과정을 거쳐 투자금지 결정, 다만 일정한 조건 하에 조건부 안전심사 통과 결정을 내릴 수도 있음

3) 실무 중 대응방안

가) 관련 동향 주시

안전심사의 적용대상이 되는 투자 분야가 대략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안전심사 신고서의 제출 서류가 “업무기구가 규정하는 기타 자료”로만 표현되어 있어 향후 실무를 통하여 적용 범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나) 투자구조에 대한 검토 필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고려하고 있는 투자가 안전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만일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면 심사에 통과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 등을 미리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 대상 기업의 실질적 지배권을 취득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도록 투자 구조(지분비율 등)를 사전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

유의해야 할 점은, “투자한 기업의 실질적 지배권을 취득한 경우”를 안전심사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외국투자자가 기업의 경영 의사 결정, 인사, 재무, 기술 등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경우”가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언급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향후 실무를 통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나이가 <외상투자안전심사방법>은 “외국투자자가 기타 방식으로 중국 경내에 투자하는 경우”도 외상투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외국투자자가 VIE 방식¹⁹으로 투자하는 경우도 외상투자자로 인정되어 <외상투자안전심사방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본 규정에 당사자들은 신고를 하기 전에 업무기구에 관련 문제에 대해 문의할 수 있으므로, 투자하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안전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업무기구에 사전에 문의하여 1차적인 의견을 받아볼 수 있다.

다) 투자실행 시기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필요

안전심사 대상 투자의 경우에는 소요되는 심사기간(초보심사 15 영업일, 일반심사 30영업일, 특별심사 60영업일 이상)을 감안하여 투자 실행 시기를 정할 필요가 있으며, 외상투자안전심사를 통과할 것을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유관기관과 상호협력 필요

향후 안전심사 지연으로 인해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안전심사 관련 기타 문의사항 등이 발생하면 유관기관에 자문을 요청할 필요도 있다.

19 VIE란, 중국 역외의 offshore entity 및 entity가 100% 투자하여 중국에 설립하는 WFOE(Wholly Foreign Owned Enterprise; 주주가 100% 외국인인기업)가, 지분투자 관계상 중국 내 domestic entity(내지기업, 주주가 100% 중국인(자연인, 법인)인기업)와 상호 분리되는 한편, 위 offshore entity 및 WFOE 가 해당 domestic entity 외의 일련의 계약 체결을 통하여 중국내 domestic entity를 통제하는 구조를 지칭한다.

5.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 규정 (2020.9.19 시행, 상무부령)

1) 입법취지 및 배경

〈대외무역법〉, 〈국가안전법〉등 유관법률에 따라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상무부가 제정·공표한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 규정〉은 중국 기업 및 여타 기관, 개인의 합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중국의 주권, 안보, 발전이익을 수호하고자 마련되었다. 동 규정은 총 14개 조항으로 되어있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주요내용

가) 규제대상(同 제 2 조)

① 중국의 국가 주권, 안전, 발전이익에 위해를 가한 경우, ② 정상적인 시장 거래 원칙을 위반하고 중국 기업, 조직, 개인(이하 “중국 실체”)과의 정상적인 교역을 중단하거나 차별적인 대우를 하여 중국기업, 조직, 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외국기업, 조직 및 개인(이하 “외국 실체”)에 대하여 중국 정부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운영방식

(1) 담당기관(同 제4조)

중앙국가기관 유관부문이 참여하는 업무기구(이하 “규정시행부서”)를 설치하여 동 규정을 운영하고 상무부가 주관한다.

(2) 조사방법

(가) 규정 시행부서는 직권 또는 관계자의 건의 및 신고에 따라 관련 외국 실체에 대한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며 조사를 개시할 경우에는 이를 공시한다(同 제5조).

(나) 규정 시행부서는 외국 실체의 행위에 대해 당사자 조사, 문건 열람 및 복사, 자료제출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피조사자는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 진술, 변호할 수 있다(同 제6조).

(3) 명단포함 여부 결정 시 고려 요소 (同 제7조)

중국정부는 ① 중국 주권, 안전, 이익의 침해 정도, ② 중국 실체의 합법적인 이익 침해 정도, ③ 국제 경제무역 규범, ④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외국 실체를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이하 “명단”)에 포함할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4) 명단에 포함될 경우의 프로세스 (同 제8조, 제9조, 제11조)

조사에 따라 외국 실체를 명단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공고를 해야하고, 해당 행위를 정정할 기한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 기한 내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다) 명단에 포함되는 경우의 규제조치 (同 제 10 조)

실체명단에 포함되는 경우, 규정 시행부서는 실제 상황에 따라 외국 실체에 대하여 아래의 조치(복수의 조치 가능)를 취하고 이를 공시할수 있다.

- ① 중국과의 수출입 활동을 금지 또는 제한
- ② 중국 국경내 투자를 금지 또는 제한
- ③ 관련 인원 및 교통수단의 중국 입국 금지 또는 제한
- ④ 관련 인원의 중국내 취업 허가, 체류, 거주 등 자격을 금지 또는 제한
- ⑤ 사안의 경중에 따라 벌금 부과
- ⑥ 기타 필요한 조치

라) 명단에 포함된 외국 실체에 대한 관리

(1) 명단에 포함된 외국 실체와 특수한 상황 하에서 거래를 하고자 하는 중국 실체는 규정 시행부서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후에 해당 외국실체와 거래를 진행할수 있다.(同 제12조)

(2) 명단에서의 삭제 요건 및 절차 (同 제13조)

(가) 명단에 포함된 외국 실체가 규정시행부서가 제시한 기한내에 문제된 행위를 시정하고 해당 행위의 부정적 영향을 해소할 경우, 규정 시행부서는 명단에서 해당 외국실체를 삭제해야 한다.

(나) 명단에 포함된 외국 실체는 규정 시행부서에 명단에서 삭제하여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규정 시행부서가 명단에서 외국 실체를 삭제하기로 결정한 경우 이를 공고해야 하며, 공고한 날부터 제10조에서 열거된 처벌은 중지된다.

3) 실무 중 대응방안

가) 관련 동향 주시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 규정〉은 특정한 상황을 전제하지 않아 운용 범위가 넓고 수출입·투자·체류·거류·입국 제한 등 처벌 범위 또한 포괄적인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2021년 3월 현재까지 아직 동 규정을 적용한 사례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기업은 (i) 우선회사의 compliance를 강화하고(특히 〈반독점법〉, 〈반부정당경쟁법〉의 적용에 유의하고 관련 compliance 활동 강화 필요), (ii) 향후 중국이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 규정〉 관련 세칙을 제정 및 시행하는지의 여부 등 입법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iii) 규정 시행부서가 어떠한 외국실체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하는지 및 어떠한 외국실체가 명단에 포함되는지 등 실무동향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기업 또는 그 관련기업, 개인이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지, 우리기업의 중국 관련 사업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지속적, 상시적 관련 규제 동향 모니터링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

나) 유관기관과 상호 협력 필요

명단에 등재되거나 처벌을 받게되는 경우, 관련 기타 문의사항 등이 발생하면 유관기관에 연락하여 자문을 요청할 필요도 있다²⁰.

20 현재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의 유관기관은 〈수출통제법〉 부분을 참고

6. 외국 법률 · 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저지 방법 (2021.1.9 시행, 상무부령)

1) 입법 취지 및 배경

〈외국 법률 · 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저지 방법〉(이하 “〈역외적용 저지 방법〉”)은 자국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하는 외국 법률과 조치가 부당하게 중국을 비롯한 외국에 적용되어 중국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에 대응하여 중국의 국가주권, 안전, 발전 이익을 수호하며, 중국 국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하 “중국 실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고(同 제1조), 공포 당일에 즉시 시행되었다. 동 방법은 〈국가안전법〉 등 유관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며, 국무원 상무부가 주관하되,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유관 부처와 협력하도록 하고 있다(同 제4조).

〈상투자법〉은 외국 정부가 중국에 투자 측면에서 차별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同 제40조), 〈역외적용 저지 방법〉에서는 이를 재차 언급하고 있다(同 제12조). 또한 〈역외적용 저지 방법〉은 외국법률과 조치의 중국 내 적용과 관련하여, 신고, 부당성 심사, 손해배상 등 내용을 규정하여, 공포되자마자 전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그 배경과 해석을 둘러싸고 다양한 추측과 의견들이 있는 상황이다.

이는 중국정부가 글로벌 통상환경의 급변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역외적용 저지 방법〉을 제정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상무부는 〈역외적용 저지 방법〉의 제정 배경을 설명하면서 EU에서 1996년 제정된 제재무역화법을 유사한 사례로 거론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역외적용 저지 방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2) 구성

〈역외적용 저지 방법〉은 총 16조로 구성되었고, 주요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제정목적 및 근거 법률

제2조 적용 대상

제5조 보고 의무

제6조 부당한 역외적용 상황 평가

제7조 금지명령

제9조 소송 및 배상

제12조 대응조치

제13조 처벌

제15조 적용 제외

제16조 시행일

3) 주요 내용

가) 적용 대상

외국 법률과 조치가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위반하여, 중국 실체와 제3국(지역) 및 그 국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과의 정상적인 경제무역 및 관련 활동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 해당 외국 법률과 조치는 〈역외적용 저지 방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同 제2조, 제5조). 상기 ‘외국 법률과 조치’에서 ‘외국’이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인지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나) 부당한 역외적용 조치 상황 여부 판단 및 금지명령 발포

상무부는 다음과 같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국 법률과 조치가 부당한 역외적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同 제6조).

- ①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준칙 위반 여부
- ② 중국 국가 주권, 안전, 발전 이익에 대해 영향을 끼칠 가능성 여부

③ 중국 실체의 합법적 이익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 여부

④ 기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

위에서 열거한 ④의 기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는 현재 명확하지 않으므로, 앞으로 규정의 적용과정 및 후속 입법 등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상무부는 이와 같은 평가를 거쳐, 외국 법률과 조치가 부당하게 역외적용되는 상황이 존재함을 확인하면, 상무부는 관련 외국 법률 및 조치를 인정, 집행, 준수하면 안된다는 금지명령을 발표할 수 있다(同 제7조).

또한 본 금지명령은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철회 또는 중지될 수도 있다.

이러한 금지명령은 외국 정부의 제재에 따라 부득이하게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제3국 실체의 불가항력의 주장을, 중국법 규범 체계 하에서 사실상 무효를 만드는 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는 다음에서 살펴보는 손해배상청구 소송(同 제9조)에서 의미가 클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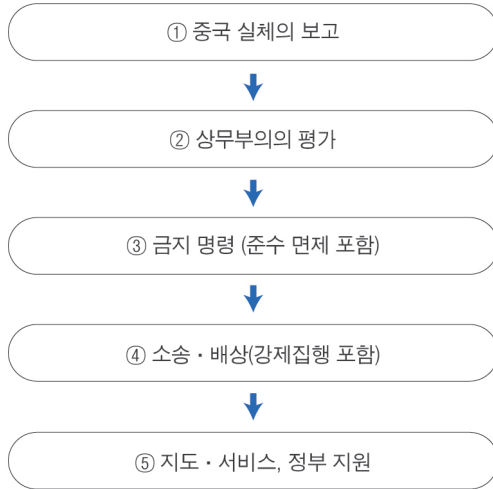
다) 적용 제외

본 방법은 중국이 체결 또는 가입한 국제조약, 협정이 규정하는 외국 법률과 조치의 역외적용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同 제15조).

이는 기존의 다자무역질서에서 중국이 이미 가입한 WTO 규정, 또는 양자관계로 체결한 한·중 FTA 등의 규정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외국 법률과 조치의 역외적용 상황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본 규정의 과도한 확장 적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 기업은 중국 기업과의 거래 과정에서 혹시 외국의 법률 및 조치 등으로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우리 기업의 거래가 중국이 이미 가입한 WTO 규정, 양자관계로 체결한 한·중 FTA 등을 준수하였고 그로 인하여 초래된 상황이라는 주장 및 근거를 갖추어서 향후 있을지 모를 법률상의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라) 적용 절차



① 중국 실체의 보고 의무

중국 실체는 외국의 법률과 조치가 제3국 실체와의 정상적인 경제무역 및 관련 활동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반드시 30일내에 상무부에 보고해야 한다(同 제5조). 만약 중국 실체가 규정에 따라 관련 상황을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벌금)를 부과할 수 있다(同제13조).

② 상무부의 부당한 역외적용 상황 존재 여부 평가

중국 상무부는 부당한 역외적용 상황 존재 여부를 위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4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고 확인한다(同 제6조).

③ 상무부의 금지명령 발표 및 준수면제 신청

중국 상무부는 부당한 역외적용 상황이 존재함을 확인하면, 외국 법률과 조치를 승인, 집행, 준수하면 안된다는 금지명령을 발표할 수 있다(同 제7조).

한편 중국 실체는 중국 상무부에 위 금지명령의 준수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同 제8조). 준수면제 신청서에는 신청 이유, 면제 신청 내용, 범위 등을 포함해야

한다. 상무부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중국 실체가 금지명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벌금)를 부과할 수 있다(同 제13조).

④ 소송·배상 및 강제집행

거래의 당사자가 중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고, 외국의 법률과 조치를 준수 하여 중국 실체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면, 피해를 본 중국 실체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상기 제③항에 따라 금지명령 준수를 면제받은 당사자는 손해를 배상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금지명령 범위 내의 외국 법률에 따른 판결, 관정으로 인하여 중국 실체가 손해를 보게 된 경우, 중국 실체는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판결,관정으로 이익을 얻은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실체는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同 제 9조)

이는 <역외적용 저지 방법>이 거래 당사자 사이에 기존 계약에 따른 계약상 청구 권원 이외에도 별도로 법적인 청구 권원을 창설하는 의미가 있다.

⑤ 지도·서비스, 정부지원

중국 상무부는 중국 실체에게 부당한 역외적용 대응을 위한 지도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同 제10조).

중국 실체가 금지명령에 근거하여 유관 외국 법률과 조치를 준수하지 않아 중대한 손실을 입으면, 중국 상무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同 제11조). 여기서 지원이란, 금전적인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구체적인 의미는 향후 추이를 관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 보복조치 및 시정명령 등

중국 정부는 외국 법률과 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에 대하여 실제 상황과 필요에 근거하여 필요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同 제12조).

또한 중국 실체가 <역외적용 저지 방법> 제5조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금지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중국 상무부는 경고 및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그 경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同 제13조).

바) 외국 법률 · 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저지 방법 요약

외국 법률 · 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저지 방법	
근거규정	<국가안전법>(2015.7.)
관리부서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적용대상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위반하여, 중국실체와 제3국(지역) 및 그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과의 정상적인 경제무역 및 관련 활동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외국 법률과 조치
주요 내용	적용제외: WTO규범, 한·중 FTA 등 중국이 기 체결한 협약 및 협정에 근거한 것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불가피한 역외적용 상황

4) 실무 중 대응 방안

가) 부속입법 및 상무부의 금지명령 발표 등 동향 주시 필요

<역외적용 저지 방법>은 공표되지 얼마되지 아니하였고, 명확하지 않은 내용도 적지 않다. 특히, <역외적용 저지 방법>의 규제 대상에 외국 기업 또는 개인이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두가지 견해가 존재한다.

(1) <역외적용 저지 방법>의 규제대상에는 외국 기업, 조직 또는 개인(이하 “외국 실체”)도 포함된다는 견해

해당 견해는 주로 아래와 같은 이유를 근거로 하고 있다.

✓ <역외적용 저지 방법>의 제정 취지 및 목적으로부터 볼 때, <역외적용 저지 방법>이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은 역외적용 관련 법률 또는 조치를 공포한 국가 이외의 다른 국가의 기업, 조직 또는 개인임

- ◆ 예컨대, 외국 정부가 법률 또는 조치를 통하여 중국 실체(예컨대 화웨이)와 다른 국가의 기업, 조직 또는 개인 사이의 거래를 부당하게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 <역외적용 저지 방법>의 규제 대상은 다른 국가의 기업, 조직 또는 개인이 됨

✓ <역외적용 저지 방법> 제2조는 외국 법률과 조치가 중국 실체와 제

3국 실체와의 정상적인 경제무역 및 관련 활동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 본 방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역외적용 저지 방법>의 규제대상은 외국 실체이고, 중국 실체(외상투자기업 포함)는 <역외적용 저지 방법>의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2) <역외적용 저지 방법>의 규제대상은 중국 실체(외상투자기업 포함)이고 외국 실체는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견해

해당 견해는 주로 아래와 같은 이유를 근거로 하고 있다.

- ✓ <역외적용 저지 방법> 제8조는 금지명령 준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는 중국 실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외국 실체도 <역외적용 저지 방법>의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금지명령 준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를 중국 실체로 한정하지 않았을 것임
- ✓ <역외적용 저지 방법> 제13조는 중국 실체가 금지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상무부는 처벌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역외적용 저지 방법>의 규제대상은 중국 실체임
- ✓ <역외적용 저지 방법> 제2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외국 법률과 조치'이지 '중국 실체와 제3국 실체 사이의 거래나 활동'이 아님
 - ◆ 구체적으로, (i)외국 정부가 법률 또는 조치를 통하여 중국 실체와 해당 외국 이외의 다른 국가의 기업, 조직 또는 개인 사이의 거래를 부당하게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 해당 외국 법률 또는 조치는 <역외적용 저지 방법>의 적용대상이고, (ii) 중국 상무부는 해당 외국 법률 또는 조치가 <역외적용 저지 방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해당 외국 법률 또는 조치에 대하여 승인, 실행, 준수하지 말 것에 관한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iii) 중국 소재 외상투자기업이 해당 외국 법률 또는 조치로 인하여 중국 실체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경우 해당 외상투자기업은 금지명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중국은 <역외적용 저지 방법>을 통해 외국의 자국법과 제도에 근거한 제재 조치에 대응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실제로 중국이 각종 통상현안과 관련하여 <역외적용 저지 방법>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향후 그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역외적용 저지 방법>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고 의무, 손해배상, 보

복조치, 처벌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운용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 특히 보복조치의 경우 <신뢰할 수 없는 주체 명단에 대한 규정>등과 결부하여 포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역외적용 저지 방법>의 해석에 관하여 다양한 견해와 입장차가 있는 상황이나, 일단은 우리 기업 역시 <역외적용 저지 방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실체와 거래하고 있어 외국 제재 및 <역외적용 저지 방법>의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향후 <역외적용 저지 방법>과 관련된 법률 또는 중국 상무부, 다른 중국 정부 부서의 부속 입법과 관련 실무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역외적용 저지 방법>에 따른 규제는 중국 상무부의 금지명령 발표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 등은 중국 상무부의 금지명령 등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지명령이 발표된 경우, 그 명령의 적용 범위 등을 연구하여 향후 중국 실체와의 거래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나) 외국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실체와 거래시 유의사항

거래 시 외국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실체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계약의 준거법이나 분쟁 발생 시 분쟁해결기관을 정할 때에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률상의 위험을 감소시키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우리 기업의 영업행위가 금지명령 대상일 경우에는 본 규정 제8조의 면제신청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외국법과 중국 금지명령 사이의 모순을 해소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 기업은 중국 내 공급망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역외적용 저지 방법>의 적용대상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 우리 기업 등 거래시 부당한 역외조치가 아니라는 주장 및 근거 필요

향후 중국 상무부에서 <역외적용 저지 방법>으로 금지명령을 발표하였을 경우에 대비하여, 우리 기업 등은 자사의 거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논리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도 충실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① 자사의 거래는 중국이 가입한 WTO의 규범이나 중국이 체결한 한·중 FTA 등에 근거하므로 적용제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

관련 거래가 중국이 가입한 WTO의 규범이나 중국이 체결한 한·중 FTA 등에 부합되는 경우, 우리 기업은 관련 거래가 중국이 가입한 WTO 규범이나, 한·중 FTA 등 중국이 체결한 협약 및 협정에 근거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초래되는 불가피한 역외적용 상황이기 때문에, <역외적용 방지 방법>의 적용제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② 자사의 거래는 금지명령에 반하지 않는다는 주장

우리 기업은 관련 근거를 구비하여 관련 거래가 중국 상무부의 금지명령에 반하지 않고,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준수한 거래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

라) 유관기관과 상호 협력 필요

향후 중국 상무부에서 금지명령을 발표하거나, 또는 우리 기업의 거래가 위 금지명령에 위반되어 문제될 경우에는 유관기관에 연락하여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Part 2

미·중 양국의 통상규제 비교

미국의 통상규제 법령 /
미·중 양국의 통상규제 법령 비교

1. 미국의 통상규제 관련 법령

가. 수출관리규정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 EAR) 개요

1) 연혁

미국 수출 통제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수출관리규정(EAR)은 미국의 수출통제개혁법(ECRA: Export Control Reform Act)을 법적 근거로 하고 있다.

애초 수출관리규정의 근거법인 수출관리법(EAA: Export Administration Act, 1979년)은 1994년 종료되었으나 수출통제제도는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른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s Powers Act)의 긴급권한에 따른 수출관리규정 재공포로 효력을 유지해 오다가, 2018년 수출통제개혁법(ECRA)의 발효를 통해 공식 부활했다. EAR 이외에 국제무기거래 규정(ITAR: 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 등도 미국 수출통제제도를 규율하고 있으나, EAR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 관리주체

미국 상무부 내 산업안보국(BIS: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이 수출관리규정의 적용 및 집행 등을 담당하고 있다.

3) 적용대상

수출관리규정은 미국 상무부의 통제품목리스트(CCL: Commerce Control List) 및 EAR99에 해당하는 품목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된다.

- ① 미국 소재
 - ② 해외 소재하나 미국산
 - ③ 해외 소재하나 미국산 간주(최소 기준(de minimis) 또는 해외직접 생산제품)
- 이때, 최소 기준(de minimis)은 미국산 통제품목의 편입 비율에 따라 나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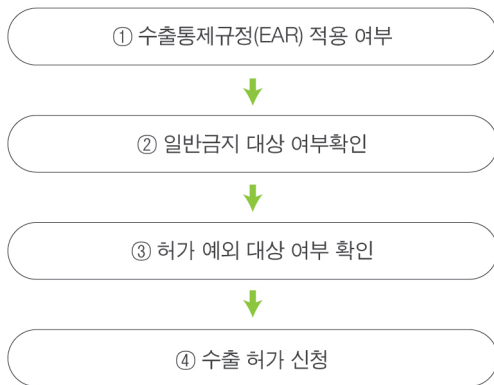
는데 통상적으로 25%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고성능 컴퓨터, 암호기술, 군수품의 경우는 0%, 즉 미국산 물품 혹은 기술이 조금이라도 포함된 경우 수출통제 대상이 된다. 또한 테러지원국으로의 재수출의 경우 10%를 기준으로 한다.

한편, 해외직접 생산제품(foreign direct product)은 국가안보를 위해 통제되는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기술을 직접 사용하여 미국 밖에서 생산된 제품을 의미한다.

수출관리규정은 동 규정의 적용을 받은 상기 모든 품목과 관련한 수출, 재수출 그리고 동일 국가 내 이전을 규제한다. '수출'은 미국 외 지역으로의 선적, 또는 지역과 관계 없이 미국인 이외의 자에게 통제대상기술이 이동되는 것을 의미한다. '재수출'은 미국이 아닌 두 국가간의 선적 또는 미국인이 아닌 두 사람간의 전달을 의미한다. '이전(transfer)'이란 한 국가 내에서 두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선적 또는 전달을 의미한다.

수출관리규정은 또한 '수출'의 범위를 확대하여 미국 내에서 외국인에게 기술의 내용을 알게 한다든지 구두로 기술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수출로 간주(deemed export)하여 이를 통제한다.

4) 수출 허가 절차



① 수출통제규정(EAR) 적용 여부

상기와 같이 상무부의 통제품목리스트와 EAR99상의 물품이 미국내 소재하는 경우, 해외에 있는 경우에도 미국산 혹은 미국산으로 간주되는 경우 EAR 적용 대상이 된다.

② 일반금지(General Prohibiting) 대상 여부

통상국가표(Commerce Country Chart) 상 수령자의 국적이나 목적지에 의해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 금지대상 최종사용자인지 여부, 즉 상무부에서 발표한 거래제한 명단(Entity List) 혹은 EAR 위반에 따른 수출금지 대상자(Denied Persons List)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고, 수출거래행위가 대량살상 무기(WMD) 확산 활동 등 금지된 행위인지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일반금지 대상이 아닌 경우 수출허가는 불요하며, 일반금지 대상인 경우 허가예외 여부 등의 점검이 필요하다.

③ 허가예외(License Exception) 대상 여부

통제품목과 금지되는 수출행위별로 소규모수출, 재수출, 인도적 지원, 미국인의 해외 개인사용을 위한 출입국 통관 등 가능한 허가 예외 유형이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허가 예외에 해당될 경우 수출허가는 불요하나, 해당되지 않을 경우 수출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④ 수출허가 신청

수출업자는 미 산업안보국(BIS)에 수출허가를 신청하며, 거래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BIS는 통상 1주일 이내에 허가 신청 승인여부를 통보하나, 특정한 검토 대상, 여타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하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의 경우 다른 경우보다 오랜 시일이 필요할 수 있다.

나. 거래제한 명단 (Entity List) 을 통한 개별기업 수출통제

미국 상무부는 2019년부터 화웨이, 중커수광(中科曙光)과 같은 슈퍼컴퓨터 관련 기업, 중국 국유원전기업 등 중국 첨단산업 업체들을 거래제한 명단에 등

재하고 개별기업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화웨이의 경우 2019년 5월 미국산 물품 등 거래제한 조치를 시행한 이래 미국의 수출통제 조치가 점점 강화되었으며, 2020년 5월에는 화웨이에 대한 해외직접제품 규정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 민감기술 및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화웨이(및 계열사)가 생산 또는 개발한 직접 제품 또는 미국산 장비를 활용해 해외 공정에서 생산된 화웨이(및 계열사)가 설계한 제품도 화웨이 및 계열사로 수출시 수출통제 관리 대상이 되었다.

2020년 9월에는 설계 주체와 무관하게 화웨이 관련 모든 거래가 수출통제 관리대상이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의 화웨이 관련 거래도 수출통제 허가 심사대상이 될 수 있다.

다 . 군사최종사용자 (MEU: Military End User) 신설

미국 상무부는 2020년 4월 중국,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의 민간을 통한 핵심 기술 획득을 차단한다는 이유로 수출관리규정(EAR)을 개정하여 중국, 러시아, 베네수엘라의 군사사용자를 통제대상에 추가했다.

동년 12월 상무부는 중국 기업 58개, 러시아 기업 45개로 구성된 군사최종사용자(MEU) 목록을 발표하였다. 동 목록에 등재된 기업에게 EAR 규정상의 통제 품목을 수출, 재수출 또는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국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상무부는 향후 MEU 목록에 추가적으로 기업이 등재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그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2. 미 · 중 양국의 통상규제 법령 비교

	중국의 수출통제 제도	미국의 수출통제 제도
근거규정	수출통제법(수출관리법) ※시행령/가이드라인미발표	수출통제개혁법(ECRA)/수출관리규정(EAR) 주로 이중용도 품목 관련 규제
관리주체	국가 수출통제 관리부문(상무부, 발개위, 군사위원회 등) ※주로 상무부가 주된 역할 담당	상무부 내 산업안보국(BIS) ※ 이외 국무부, 국방부 등이 수출통제제도 이행
적용범위	물품, 기술, 서비스(데이터등포함)	주로 물품, 소프트웨어, 기술
Entity List	2020.9월 상무부령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 규정' 발표(수출통제법과 별도 규정) 명단 포함시 수출통제뿐 아니라 투자, 중국 내 입국 · 취업 등 활동제한 ※ 명단 미발표	EAR내 규정(수출통제대상) 거제제한명단 기 발표, 점차 확대
역외적용성	역외적용 가능 여부 명확하지 않음	역외 적용 가능(최소 기준 이상 미국산 사용시 또는 해외 직접생산 제품일 경우)

미국 및 중국은 모두 WTO 및 주요 대외수출통제체제(핵공급그룹(NSG) 등) 가입국으로서 기본적인 수출통제 관련 법령의 틀은 유사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중국의 수출통제 관련 법령이 비교적 최근에 정비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과 중국의 수출통제제도는 주로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 통상규제 관련 법령 내용

미국의 통상규제 관련 법령은 1970년대 첫 도입된 이래 제개정을 통하여 그 적용 범위 및 요건 등이 비교적 명확한 반면, 중국의 (1) 〈수출통제법〉 등 통상규제 관련 법령은 제정, 시행이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져 현재까지 해당 법령에 따른 수출 통제 또는 임시통제 리스트, 최종사용자 관리 명단, 수출통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고, (2) 공포 되자마자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외국 법률 · 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저지 방법〉 역시 그 규제 대

상에 외국 실체가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향후 세부 규정들이 발표될 경우 관련 내용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나. 적용 대상

미국의 통상규제 관련 법령의 적용 범위는 일견 중국에 비해 포괄적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통상규제 관련 법령은 최소기준 이상 미국산 물품/기술 사용시 또는 해외직접생산 제품일 경우 미국이 아닌 두 국가간의 선적 또는 미국인이 아닌 두 사람간의 전달 행위에도 적용되는 등 역외적용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데 비해, 현재까지 공포된 중국 통상규제 관련 법령은 그 역외적용 가능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Part 3

참고자료

(원문)

기존 통상규제 법령(대외무역법 등) /
수출통제법 /
중국 수출 제한·금지 기술 목록 /
외상투자안전심사방법 /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 규정 /
외국 법률·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저지 방법

(번역문)

수출통제법 /
중국 수출 제한·금지 기술 목록(2008년 목록과 2020년 목록 비교) /
외상투자안전심사방법 /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 규정 /
외국 법률과 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저지 방법

- 아래 법률의 원문은 중국의 유관부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았으며 한국어본은 비공식 번역본입니다. 이에 따라 주중대한민국대사관은 아래 법률의 원문 및 번역본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원문]

1. 기존 법령 관련조항

가.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2016 年 11 月 7 日起施行)]

第七条 任何国家或者地区在贸易方面对中华人民共和国采取歧视性的禁止、限制或者其他类似措施的，中华人民共和国可以根据实际情况对该国家或者该地区采取相应的措施。

第十六条 国家基于下列原因，可以限制或者禁止有关货物、技术的进口或者出口：

(一) 为维护国家安全、社会公共利益或者公共道德，需要限制或者禁止进口或者出口的；

(二) 为保护人的健康或者安全，保护动物、植物的生命或者健康，保护环境，需要限制或者禁止进口或者出口的；

(三) 为实施与黄金或者白银进出口有关的措施，需要限制或者禁止进口或者出口的；

(四) 国内供应短缺或者为有效保护可能用竭的自然资源，需要限制或者禁止出口的；

(五) 输往国家或者地区的市场容量有限，需要限制出口的；

(六) 出口经营秩序出现严重混乱，需要限制出口的；

(七) 为建立或者加快建立国内特定产业，需要限制进口的；

(八) 对任何形式的农业、牧业、渔业产品有必要限制进口的；

(九) 为保障国家国际金融地位和国际收支平衡，需要限制进口的；

(十) 依照法律、行政法规的规定，其他需要限制或者禁止进口或者出口的；

(十一) 根据我国缔结或者参加的国际条约、协定的规定, 其他需要限制或者禁止进口或者出口的。

第十七条 国家对与裂变、聚变物质或者衍生此类物质的物质有关的货物、技术进出口, 以及与武器、弹药或者其他军用物资有关的进出口, 可以采取任何必要的措施, 维护国家安全。

在战时或者为维护国际和平与安全, 国家在货物、技术进出口方面可以采取任何必要的措施。

第十八条 国务院对外贸易主管部门会同国务院其他有关部门, 依照本法第十六条和第十七条的规定, 制定、调整并公布限制或者禁止进出口的货物、技术目录。

国务院对外贸易主管部门或者由其会同国务院其他有关部门, 经国务院批准, 可以在本法第十六条和第十七条规定的范围内, 临时决定限制或者禁止前款规定目录以外的特定货物、技术的进口或者出口。

第十九条 国家对限制进口或者出口的货物, 实行配额、许可证等方式管理; 对限制进口或者出口的技术, 实行许可证管理。

实行配额、许可证管理的货物、技术, 应当按照国务院规定经国务院对外贸易主管部门或者经其会同国务院其他有关部门许可, 方可进口或者出口。

国家对部分进口货物可以实行关税配额管理。

第二十六条 国家基于下列原因, 可以限制或者禁止有关的国际服务贸易:

(一) 为维护国家安全、社会公共利益或者公共道德, 需要限制或者禁止的;

(二) 为保护人的健康或者安全, 保护动物、植物的生命或者健康, 保护环境, 需要限制或者禁止的;

(三) 为建立或者加快建立国内特定服务产业, 需要限制的;

(四) 为保障国家外汇收支平衡, 需要限制的;

(五) 依照法律、行政法规的规定, 其他需要限制或者禁止的;

(六) 根据我国缔结或者参加的国际条约、协定的规定, 其他需要限制或者禁止的。

나. 외상투자법 [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法 (2020年1月1日起施行)]

第六条 在中国境内进行投资活动的外国投资者、外商投资企业, 应当遵守中国法律法规, 不得危害中国国家安全、损害社会公共利益。

第二十条 国家对外国投资者的投资不实行征收。

在特殊情况下, 国家为了公共利益的需要, 可以依照法律规定对外国投资者的投资实行征收或者征用。征收、征用应当依照法定程序进行, 并及时给予公平、合理的补偿。

第三十二条 外商投资企业开展生产经营活动, 应当遵守法律、行政法规有关劳动保护、社会保险的规定, 依照法律、行政法规和国家有关规定办理税收、会计、外汇等事宜, 并接受相关主管部门依法实施的监督检查。

第三十五条 国家建立外商投资安全审查制度, 对影响或者可能影响国家安全的外商投资进行安全审查。

依法作出的安全审查决定为最终决定。

다. 형법 [中华人民共和国刑法 (2021年3月1日起施行)]

第一百零二条 【背叛国家罪】勾结外国, 危害中华人民共和国的主权、领土完整和安全的, 处无期徒刑或者十年以上有期徒刑。

与境外机构、组织、个人相勾结, 犯前款罪的, 依照前款的规定处罚。

第一百一十条 【间谍罪】有下列间谍行为之一, 危害国家安全的, 处十年以上有期徒刑或者无期徒刑; 情节较轻的, 处三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

- (一) 参加间谍组织或者接受间谍组织及其代理人的任务的;
- (二) 为敌人指示轰击目标的。

第一百一十一条 【为境外窃取、刺探、收买、非法提供国家秘密、情报罪】为境外的机构、组织、人员窃取、刺探、收买、非法提供国家秘密或者情报的，处五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情节特别严重的，处十年以上有期徒刑或者无期徒刑；情节较轻的，处五年以下有期徒刑、拘役、管制或者剥夺政治权利。

第一百五十一条 【走私武器、弹药罪】【走私核材料罪】【走私假币罪】走私武器、弹药、核材料或者伪造的货币的，处七年以上有期徒刑，并处罚金或者没收财产；情节特别严重的，处无期徒刑，并处没收财产；情节较轻的，处三年以上七年以下有期徒刑，并处罚金。

【走私文物罪】【走私贵重金属罪】【走私珍贵动物、珍贵动物制品罪】走私国家禁止出口的文物、黄金、白银和其他贵重金属或者国家禁止进出口的珍贵动物及其制品的，处五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并处罚金；情节特别严重的，处十年以上有期徒刑或者无期徒刑，并处没收财产；情节较轻的，处五年以下有期徒刑，并处罚金。

【走私国家禁止进出口的货物、物品罪】走私珍稀植物及其制品等国家禁止进出口的其他货物、物品的，处五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并处或者单处罚金；情节严重的，处五年以上有期徒刑，并处罚金。

单位犯本条规定之罪的，对单位判处罚金，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照本条各款的规定处罚。

第二百二十五条 【非法经营罪】违反国家规定，有下列非法经营行为之一，扰乱市场秩序，情节严重的，处五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并处或者单处违法所得一倍以上五倍以下罚金；情节特别严重的，处五年以上有期徒刑，并处违法所得一倍以上五倍以下罚金或者没收财产：

(一) 未经许可经营法律、行政法规规定的专营、专卖物品或者其他限制买卖的物品的；

(二) 买卖进出口许可证、进出口原产地证明以及其他法律、行政法规规定的经营许可证或者批准文件的；

(三) 未经国家有关主管部门批准非法经营证券、期货、保险业务的，或者非法从事资金支付结算业务的；

(四) 其他严重扰乱市场秩序的非法经营行为。

2. 수출통제법 [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 (2020年12月1日起施行)]

第一章 总则

第一条 为了维护国家安全和利益，履行防扩散等国际义务，加强和规范出口管制，制定本法。

第二条 国家对两用物项、军品、核以及其他与维护国家安全和利益、履行防扩散等国际义务相关的货物、技术、服务等物项（以下统称管制物项）的出口管制，适用本法。

前款所称管制物项，包括物项相关的技术资料等数据。

本法所称出口管制，是指国家对从中华人民共和国境内向境外转移管制物项，以及中华人民共和国公民、法人和非法人组织向外国组织和个人提供管制物项，采取禁止或者限制性措施。

本法所称两用物项，是指既有民事用途，又有军事用途或者有助于提升军事潜力，特别是可以用于设计、开发、生产或者使用大规模杀伤性武器及其运载工具的货物、技术和服务。

本法所称军品，是指用于军事目的的装备、专用生产设备以及其他相关货物、技术和服务。

本法所称核，是指核材料、核设备、反应堆用非核材料以及相关技术和服

务。

第三条 出口管制工作应当坚持总体国家安全观，维护国际和平，统筹安全和发展，完善出口管制管理和服务。

第四条 国家实行统一的出口管制制度，通过制定管制清单、名录或者目录（以下统称管制清单）、实施出口许可等方式进行管理。

第五条 国务院、中央军事委员会承担出口管制职能的部门（以下统称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按照职责分工负责出口管制工作。国务院、中央军事委员会其他有关部门按照职责分工负责出口管制有关工作。

国家建立出口管制工作协调机制，统筹协调出口管制工作重大事

项。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和国务院有关部门应当密切配合，加强信息共享。

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会同有关部门建立出口管制专家咨询机制，为出口管制工作提供咨询意见。

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适时发布有关行业出口管制指南，引导出口经营者建立健全出口管制内部合规制度，规范经营。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有关部门依照法律、行政法规的规定负责出口管制有关工作。

第六条 国家加强出口管制国际合作，参与出口管制有关国际规则的制定。

第七条 出口经营者可以依法成立和参加有关的商会、协会等行业自律组织。

有关商会、协会等行业自律组织应当遵守法律、行政法规，按照章程对其成员提供与出口管制有关的服务，发挥协调和自律作用。

第二章 管制政策、管制清单和管制措施

第一节 一般规定

第八条 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会同有关部门制定出口管制政策，其中重大政策应当报国务院批准，或者报国务院、中央军事委员会批准。

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可以对管制物项出口目的国家和地区进行评估，确定风险等级，采取相应的管制措施。

第九条 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依据本法和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根据出口管制政策，按照规定程序会同有关部门制定、调整管制物项出口管制清单，并及时公布。

根据维护国家安全和利益、履行防扩散等国际义务的需要，经国务院批准，或者经国务院、中央军事委员会批准，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可以对出口管制清单以外的货物、技术和服务实施临时管制，并

予以公告。临时管制的实施期限不超过二年。临时管制实施期限届满前应当及时进行评估，根据评估结果决定取消临时管制、延长临时管制或者将临时管制物项列入出口管制清单。

第十条 根据维护国家安全和利益、履行防扩散等国际义务的需要，经国务院批准，或者经国务院、中央军事委员会批准，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会同有关部门可以禁止相关管制物项的出口，或者禁止相关管制物项向特定目的国家和地区、特定组织和个人出口。

第十一条 出口经营者从事管制物项出口，应当遵守本法和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依法需要取得相关管制物项出口经营资格的，应当取得相应的资格。

第十二条 国家对管制物项的出口实行许可制度。

出口管制清单所列管制物项或者临时管制物项，出口经营者应当向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申请许可。

出口管制清单所列管制物项以及临时管制物项之外的货物、技术和服务，出口经营者知道或者应当知道，或者得到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通知，相关货物、技术和服务可能存在以下风险的，应当向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申请许可：

- (一) 危害国家安全和利益；
- (二) 被用于设计、开发、生产或者使用大规模杀伤性武器及其运载工具；
- (三) 被用于恐怖主义目的。

出口经营者无法确定拟出口的货物、技术和服务是否属于本法规定的管制物项，向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提出咨询的，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应当及时答复。

第十三条 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综合考虑下列因素，对出口经营者出口管制物项的申请进行审查，作出准予或者不予许可的决定：

- (一) 国家安全和利益；
- (二) 国际义务和对外承诺；

- (三) 出口类型；
- (四) 管制物项敏感程度；
- (五) 出口目的国家或者地区；
- (六) 最终用户和最终用途；
- (七) 出口经营者的相关信用记录；
- (八) 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因素。

第十四条 出口经营者建立出口管制内部合规制度，且运行情况良好的，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可以对其出口有关管制物项给予通用许可等便利措施。具体办法由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规定。

第十五条 出口经营者应当向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提交管制物项的最终用户和最终用途证明文件，有关证明文件由最终用户或者最终用户所在国家和地区政府机构出具。

第十六条 管制物项的最终用户应当承诺，未经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允许，不得擅自改变相关管制物项的最终用途或者向任何第三方转让。

出口经营者、进口商发现最终用户或者最终用途有可能改变的，应当按照规定立即报告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

第十七条 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建立管制物项最终用户和最终用途风险管理制度，对管制物项的最终用户和最终用途进行评估、核查，加强最终用户和最终用途管理。

第十八条 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对有下列情形之一的进口商和最终用户，建立管控名单：

- (一) 违反最终用户或者最终用途管理要求的；
- (二) 可能危害国家安全和利益的；
- (三) 将管制物项用于恐怖主义目的的。

对列入管控名单的进口商和最终用户，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可以采取禁止、限制有关管制物项交易，责令中止有关管制物项出口等

必要的措施。

出口经营者不得违反规定与列入管控名单的进口商、最终用户进行交易。出口经营者在特殊情况下确需与列入管控名单的进口商、最终用户进行交易的，可以向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提出申请。

列入管控名单的进口商、最终用户经采取措施，不再有第一款规定情形的，可以向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申请移出管控名单；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可以根据实际情况，决定将列入管控名单的进口商、最终用户移出管控名单。

第十九条 出口货物的发货人或者代理报关企业出口管制货物时，应当向海关交验由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颁发的许可证件，并按照国家有关规定办理报关手续。

出口货物的发货人未向海关交验由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颁发的许可证件，海关有证据表明出口货物可能属于出口管制范围的，应当向出口货物发货人提出质疑；海关可以向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提出组织鉴别，并根据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作出的鉴别结论依法处置。在鉴别或者质疑期间，海关对出口货物不予放行。

第二十条 任何组织和个人不得为出口经营者从事出口管制违法行为提供代理、货运、寄递、报关、第三方电子商务交易平台和金融等服务。

第二节两用物项出口管理

第二十一条 出口经营者向国家两用物项出口管制管理部门申请出口两用物项时，应当依照法律、行政法规的规定如实提交相关材料。

第二十二条 国家两用物项出口管制管理部门受理两用物项出口申请，单独或者会同有关部门依照本法和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对两用物项出口申请进行审查，并在法定期限内作出准予或者不予许可的决定。作出准予许可决定的，由发证机关统一颁发出口许可证。

第三节军品出口管理

第二十三条 国家实行军品出口专营制度。从事军品出口的经营者，应当获得军品出口专营资格并在核定的经营范围内从事军品出口经营活动。

军品出口专营资格由国家军品出口管制管理部门审查批准。

第二十四条 军品出口经营者应当根据管制政策和产品属性，向国家军品出口管制管理部门申请办理军品出口立项、军品出口项目、军品出口合同审查批准手续。

重大军品出口立项、重大军品出口项目、重大军品出口合同，应当经国家军品出口管制管理部门会同有关部门审查，报国务院、中央军事委员会批准。

第二十五条 军品出口经营者在出口军品前，应当向国家军品出口管制管理部门申请领取军品出口许可证。

军品出口经营者出口军品时，应当向海关交验由国家军品出口管制管理部门颁发的许可证件，并按照国家有关规定办理报关手续。

第二十六条 军品出口经营者应当委托经批准的军品出口运输企业办理军品出口运输及相关业务。具体办法由国家军品出口管制管理部门会同有关部门规定。

第二十七条 军品出口经营者或者科研生产单位参加国际性军品展览，应当按照程序向国家军品出口管制管理部门办理审批手续。

第三章 监督管理

第二十八条 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依法对管制物项出口活动进行监督检查。

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对涉嫌违反本法规定的行为进行调查，可以采取下列措施：

(一) 进入被调查者营业场所或者其他有关场所进行检查；

(二) 询问被调查者、利害关系人以及其他有关组织或者个人，要求其与被调查事件有关的事项作出说明；

(三) 查阅、复制被调查者、利害关系人以及其他有关组织或者个人的有关单证、协议、会计账簿、业务函电等文件、资料；

(四) 检查用于出口的运输工具，制止装载可疑的出口物项，责令运回非法出口的物项；

(五) 查封、扣押相关涉案物项；

(六) 查询被调查者的银行账户。

采取前款第五项、第六项措施，应当经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负责人书面批准。

第二十九条 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依法履行职责，国务院有关部门、地方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予以协助。

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单独或者会同有关部门依法开展监督检查和调查工作，有关组织和个人应当予以配合，不得拒绝、阻碍。

有关国家机关及其工作人员对调查中知悉的国家秘密、商业秘密、个人隐私和个人信息依法负有保密义务。

第三十条 为加强管制物项出口管理，防范管制物项出口违法风险，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可以采取监管谈话、出具警示函等措施。

第三十一条 对涉嫌违反本法规定的行为，任何组织和个人有权向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举报，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接到举报后应当依法及时处理，并为举报人保密。

第三十二条 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根据缔结或者参加的国际条约，或者按照平等互惠原则，与其他国家或者地区、国际组织开展出口管制合作与交流。

中华人民共和国境内的组织和个人向境外提供出口管制相关信息，应当依法进行；可能危害国家安全和利益的，不得提供。

第四章 法律责任

第三十三条 出口经营者未取得相关管制物项的出口经营资格从事有关管制物项出口的，给予警告，责令停止违法行为，没收违法所得

，违法经营额五十万元以上的，并处违法经营额五倍以上十倍以下罚款；没有违法经营额或者违法经营额不足五十万元的，并处五十万元以上五百万元以下罚款。

第三十四条 出口经营者有下列行为之一的，责令停止违法行为，没收违法所得，违法经营额五十万元以上的，并处违法经营额五倍以上十倍以下罚款；没有违法经营额或者违法经营额不足五十万元的，并处五十万元以上五百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业整顿，直至吊销相关管制物项出口经营资格：

- (一) 未经许可擅自出口管制物项；
- (二) 超出出口许可证件规定的许可范围出口管制物项；
- (三) 出口禁止出口的管制物项。

第三十五条 以欺骗、贿赂等不正当手段获取管制物项出口许可证件，或者非法转让管制物项出口许可证件的，撤销许可，收缴出口许可证，没收违法所得，违法经营额二十万元以上的，并处违法经营额五倍以上十倍以下罚款；没有违法经营额或者违法经营额不足二十万元的，并处二十万元以上二百万元以下罚款。

伪造、变造、买卖管制物项出口许可证件的，没收违法所得，违法经营额五万元以上的，并处违法经营额五倍以上十倍以下罚款；没有违法经营额或者违法经营额不足五万元的，并处五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罚款。

第三十六条 明知出口经营者从事出口管制违法行为仍为其提供代理、货运、寄递、报关、第三方电子商务交易平台和金融等服务的，给予警告，责令停止违法行为，没收违法所得，违法经营额十万元以上的，并处违法经营额三倍以上五倍以下罚款；没有违法经营额或者违法经营额不足十万元的，并处十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罚款。

第三十七条 出口经营者违反本法规定与列入管控名单的进口商、最终用户进行交易的，给予警告，责令停止违法行为，没收违法所得，违法经营额五十万元以上的，并处违法经营额十倍以上二十倍以下罚款；没有违法经营额或者违法经营额不足五十万元的，并处五十万元以上五百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业整顿，

直至吊销相关管制物项出口经营资格。

第三十八条 出口经营者拒绝、阻碍监督检查的，给予警告，并处十万元以上三十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业整顿，直至吊销相关管制物项出口经营资格。

第三十九条 违反本法规定受到处罚的出口经营者，自处罚决定生效之日起，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可以在五年内不受理其提出的出口许可申请；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可以禁止其在五年内从事有关出口经营活动，因出口管制违法行为受到刑事处罚的终身不得从事有关出口经营活动。

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依法将出口经营者违反本法的情况纳入信用记录。

第四十条 本法规定的出口管制违法行为，由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进行处罚；法律、行政法规规定由海关处罚的，由其依照本法进行处罚。

第四十一条 有关组织或者个人对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的不予许可决定不服的，可以依法申请行政复议。行政复议决定为最终裁决。

第四十二条 从事出口管制管理的国家工作人员玩忽职守、徇私舞弊、滥用职权的，依法给予处分。

第四十三条 违反本法有关出口管制管理规定，危害国家安全和利益的，除依照本法规定处罚外，还应当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进行处理和处罚。

违反本法规定，出口国家禁止出口的管制物项或者未经许可出口管制物项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四十四条 中华人民共和国境外的组织和个人，违反本法有关出口管制管理规定，危害中华人民共和国国家安全和利益，妨碍履行防扩散等国际义务的，依法处理并追究其法律责任。

第五章 附则

第四十五条 管制物项的过境、转运、通运、再出口或者从保税区、出口加工区等海关特殊监管区域和出口监管仓库、保税物流中心等保税监管场所向境外出口，依照本法的有关规定执行。

第四十六条 核以及其他管制物项的出口，本法未作规定的，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执行。

第四十七条 用于武装力量海外运用、对外军事交流、军事援助等的军品出口，依照有关法律法规的规定执行。

第四十八条 任何国家或者地区滥用出口管制措施危害中华人民共和国国家安全和利益的，中华人民共和国可以根据实际情况对该国家或者地区对等采取措施。

第四十九条 本法自2020年12月1日起施行。

3. 중국 수출 제한 · 금지 기술 목록

[中国禁止出口限制出口技术目录(2020年8月28日,商务部、科技部公告)]

《中国禁止出口限制出口技术目录》调整内容

一、禁止出口部分

(一) 畜牧业

1. 删去微生物肥料技术(编号:050302J)条目。
2. 将蚕类品种、繁育和蚕茧采集加工利用技术(编号:050304J)控制要点1修改为:“除杂交一代蚕品种以外的蚕遗传资源”。

(二) 医药制造业

3. 删去化学合成及半合成咖啡因生产技术(编号:052701J)条目。
4. 删去核黄素(VB2)生产工艺(编号:052702J)条目。
5. 删去化学合成及半合成药物生产技术(编号:052705J)条目。

(三) 交通运输设备制造业

6. 将航天器测控技术(编号:053701J)控制要点修改为:“我国使用的卫星及其运载无线电遥控遥测编码和加密技术”。

(四) 仪器仪表及文化、办公用机械制造业

7. 地图制图技术(编号:054101J)控制要点修改为:“直接输出比例尺 $\geq 1:10$ 万我国地形要素的图像产品”。

(五) 电信和其他信息传输服务业

8. 将空间数据传输技术(编号:056002J)控制要点修改为:“涉及下列其中之一的卫星数据加密技术:1. 保密原理、方案及线路设计技术2. 加密与解密的软件、硬件”。
9. 将卫星应用技术(编号:056003J)控制要点修改为“北斗卫星导航系统信息传输加密技术”。

二、限制出口部分

(一) 农业

10. 将“农作物(含牧草)繁育技术”(编号:050101X)修改为“农作物(含牧草)种质资源及其繁育技术”(编号:050101X),增加控制要点“6. 对外提供农作物种质资源分类名录所列农作物(含牧草)种质资源及其繁育技术”。

11. 新增“农业野生植物人工繁育技术(编号:180103X),控制要点:1.《国家重点保护野生植物名录》所列农业部门主管的I级野生植物人工繁育技术2.列入《濒危野生动植物种国际贸易公约》的农业野生植物人工繁育技术”。

12. 新增“基因工程(基因及载体)(编号:180104X),控制要点:1.新发现的植物雄性不育基因、恢复基因及载体2.新发现的抗病、抗虫基因及载体3.新发现的抗逆基因及载体4.新发现的品质基因及载体5.新发现的产量相关基因及载体6.新发现的其它重要基因及载体7.特有基因操作技术”。

(二) 畜牧业

13. 新增“绒山羊繁育技术(编号:180302X),控制要点:杂交,人工授精,胚胎、基因克隆繁育技术”。

14. 新增“绒山羊品种的培育技术(编号:180303X),控制要点:内蒙古绒山羊、乌珠穆沁白绒山羊、罕山白绒山羊、辽宁绒山羊、晋岚绒山羊、河西绒山羊和西藏绒山羊母本、父本、杂交改良培育新品”。

(三) 渔业

15. 将水产种质繁育技术(编号:050401X)控制要点4(1)修改为:“鳜鱼人工催产、育苗技术”。

(四) 农、林、牧、渔服务业

16. 删去兽药生产技术(编号:050501X)控制要点3、4、7、8、10、12、13、15、16。

17. 删去新城疫疫苗技术 (编号: 050508X) 条目。

(五) 化学原料及化学制品制造业

18. 将化学原料生产技术 (编号: 052601X) 控制要点2修改为: “ 硫磷混酸协同体系高效处理复杂白钨矿新技术 ”。

19. 在生物农药生产技术 (编号: 052603X) 项下新增控制要点: “ 8. 阿维菌素菌种及生产技术9. Bt菌株及生产技术10. 枯草芽孢杆菌菌株及生产技术11. 春雷霉素菌株及生产技术12. 嘧啶核苷类抗菌素 (农抗120) 菌株及生产技术13. 白僵菌、绿僵菌菌种及生产技术 ”。

(六) 医药制造业

20. 将生物技术药物生产技术 (编号: 052702X) 控制要点修改为: “ 1. 通过分离、筛选得到的具有工业化生产条件的菌种、毒种及其选育技术 (1) 流行性出血热灭活疫苗生产毒种 (含野鼠型及家鼠型) 2. 用于活疫苗生产的减毒的菌种或毒种及其选育技术 (1) 甲型肝炎减毒活疫苗生产毒种 (2) 乙型肝炎减毒活疫苗生产毒种3. 用基因工程方法获得的具有工业化生产条件的菌种、毒种及其选育技术4. 肠道病毒71型灭活疫苗 5. 口服轮状病毒活疫苗 6. EV71疫苗用毒株 7. CA16疫苗用毒株 8. 五价、六价轮状疫苗生产核心工艺技术9. 多糖蛋白结合技术 ”。

21. 删去化学合成及半合成药物生产技术 (编号: 052703X) 条目。

22. 删去天然药物生产技术 (编号: 052704X) 条目。

23. 删去带生物活性的功能性高分子材料制备和加工技术 (编号: 052706X) 条目。

24. 在组织工程医疗器械产品的制备和加工技术 (编号: 052707X) 项下增加控制要点: “ 6. 医用诊断器械及设备制造技术 (包括国产新一代基因检测仪、第三代单分子测序仪) ”。

(七) 非金属矿物制品业

25. 在人工晶体生长与加工技术 (编号: 053104X) 项下增加控制要点: “ 15. KBBF晶体生长与棱镜耦合器件加工技术 ”。

(八) 通用设备制造业

26. 新增“3D打印技术(编号:183506X),控制要点:‘铸锻铣一体化’金属3D打印关键技术”。

27. 新增“工程机械的应用技术(编号:183507X),控制要点:装载机、推土机、挖掘机等减振降噪、智能控制等研发成果的应用技术”。

28. 新增“机床产业基础共性技术(编号:183508X),控制要点:机床的创新设计、基础工艺、试验验证、可靠性及功能安全等机床产业基础共性技术研究”。

(九) 专业设备制造业

29. 删去刑事技术(编号:053603X)控制要点4。

30. 删去医用诊断器械及设备制造技术(编号:053604X)控制要点4。

31. 新增“大型高速风洞设计建设技术(编号:183605X),控制要点:特殊功能结构设计、宽温域特种金属/复合材料性能分析、大型复杂装备智能制造与先进测试技术”。

32. 新增“大型振动平台设计建设技术(编号:183606X),控制要点:双轴同步振动试验平台、50吨电动振动试验系统”。

33. 新增“石油装备核心部件设计制造技术(编号:183607X),控制要点:石油装备中高端井下作业工具和软件,油气集输关键设备、顶驱、注入头、压裂痕、液氮泵、液氮蒸发器等核心钻完井部件的设计制造技术”。

34. 新增“大型石化设备基础工艺技术(编号:183608X),控制要点:大型石化和煤化工装置反应器、炉、热交换器、球罐等静设备的材料技术、焊接技术、热处理技术、加工技术和检测技术”。

35. 新增“重型机械行业战略性新产品设计技术(编号:183609X),控制要点:重型机械行业战略性新产品设计技术,如第三和第四代核电设备及材料技术、海工设备技术等”。

(十) 交通运输设备制造业

36. 新增“海上岛礁利用和安全保障装备技术(编号:183708X),控制要点:海上执法指挥调度系统、大型/超大型浮式保障基地、极大型海上浮式空海港、海上卫星发射平台、岛礁中型浮式平台、远海岛礁开发建设施工装置、远海通信网络系统支撑平台等装备技术”。

37. 新增“航空、航天轴承技术(编号:183709X),控制要点:火箭发动机轴承技术、卫星长寿命轴承技术”。

(十一) 通信设备、计算机及其他电子设备制造业

38. 将空间仪器及设备制造技术(编号:054011X)控制要点修改为:“1. 通道数>500的遥感成像光谱仪制造技术2. 空间环境专用器件设计和工艺、评价方法和设备、空间润滑方法和润滑件3. 高分辨率合成孔径雷达技术的总体技术方案和主要技术指标4. 高分辨率可见光、红外成像技术的总体方案及指标5. 毫米波、亚毫米波天基空间目标探测技术的总体方案及指标”。

39. 新增“无人机技术(编号:184012X),控制要点:1. 不同级别的固定翼和旋翼类无人机中的微型任务载荷,自主导航、自适应控制、感知与规避、高可靠通信、适航及空域管理等关键技术2. 无人机制造中所涉及的惯性测量单元、倾角传感器、大气监测传感器、电流传感器、磁传感器、发动机流量传感器等类型传感器的关键技术3. 电磁干扰射线枪等反无人机技术”。

40. 新增“激光技术(编号:184013X),控制要点:利用自主研发的KBBF单晶体制造深紫外固体激光器的关键技术”。

(十二) 仪器仪表及文化、办公用机械制造业

41. 在地图制图技术(编号:054107X)项下增加控制要点:“直接输出比例尺 $\geq 1:10$ 万地形要素的应用技术”。

(十三) 电力、热力的生产和供应业

42. 新增“大型电力设备设计技术(编号:184401X),控制要点:煤炭清洁高效利用和灵活运用技术、大型水电机组设计技术、第三代核电机组设计技术、特高压交直流输变电成套装备设计

等关键技术”。

(十四) 电信和其他信息传输服务业

43. 删去空间数据传输技术(编号:056003X)控制要点1、3。

44. 删去卫星应用技术(编号:056004X)控制要点2,将控制要点1中“双星导航定位系统”修改为“北斗卫星导航定位系统”。

(十五) 计算机服务业

45. 在信息处理技术(编号:056101X)项下增加控制要点:“17. 语音合成技术(包括语料库设计、录制和标注技术,语音信号特征分析和提取技术,文本特征分析和预测技术,语音特征概率统计模型构建技术等)18. 人工智能交互界面技术(包括语音识别技术,麦克风阵列技术,语音唤醒技术,交互理解技术等)19. 语音评测技术(包括朗读自动评分技术,口语表达自动评分技术,发音检核技术等)20. 智能阅卷技术(包括印刷体扫描识别技术,手写体扫描识别技术,印刷体拍照识别技术,手写体拍照识别技术,中英文作文批改技术等)21. 基于数据分析的个性化信息推送服务技术”。

46. 新增“密码安全技术(编号:186103X),控制要点:1. 密码芯片设计和实现技术(高速密码算法、并行加密技术、密码芯片的安全设计技术、片上密码芯片(SOC)设计与实现技术、基于高速算法标准的高速芯片实现技术)2. 量子密码技术(量子密码实现方法、量子密码的传输技术、量子密码网络、量子密码工程实现技术)”。

47. 新增“高性能检测技术(编号:186104X),控制要点:1. 高速网络环境下的深度包检测技术2. 未知攻击行为的获取和分析技术3. 基于大规模信息采集与分析的战略预警技术4. 网络预警联动反应技术5. APT攻击检测技术6. 威胁情报生成技术”。

48. 新增“信息防御技术(编号:186105X),控制要点:1. 信息隐藏与发现技术2. 信息分析与监控技术3. 系统和数据快速恢复技术4. 可信计算技术”。

49. 新增“信息对抗技术(编号:186106X),控制要点:1. 流量捕获和分析技术2. 漏洞发现和挖掘技术3. 恶意代码编制和植入技

术4. 信息伪装技术5. 网络攻击追踪溯源技术”。

(十六) 软件业

50. 删去信息安全防火墙软件技术(编号:056202X)条目。

51. 新增“基础软件安全增强技术(编号:186203X),控制要点:1.操作系统安全增加技术:《操作系统安全技术要求》(GB/T 20272-2006)四级(包含)以上技术要求2.数据库系统安全增强技术:《数据库系统安全技术要求》(GB/T 20273-2006)四级(包含)以上技术要求”。

(十七) 专业技术服务业

52. 将真空技术(编号:057604X)控制要点修改为:“真空度 $< 10^{-9}$ Pa的超高真空获取技术”。

53. 新增“航天遥感影像获取技术(编号:187608X),控制要点:航天遥感器技术,包括航空遥感器仿真(地面、航空)技术、遥感数据编码技术”。

4. 외상투자안전심사방법

[外商投资安全审查办法 2021年1月18日起施行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商务令]

第一条为了适应推动形成全面开放新格局的需要，在积极促进外商投资的同时有效预防和化解国家安全风险，根据《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法》《中华人民共和国国家安全法》和相关法律，制定本办法。

第二条对影响或者可能影响国家安全的外商投资，依照本办法的规定进行安全审查。本办法所称外商投资，是指外国投资者直接或者间接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以下简称境内）进行的投资活动，包括下列情形：

（一）外国投资者单独或者与其他投资者共同在境内投资新建项目或者设立企业；

（二）外国投资者通过并购方式取得境内企业的股权或者资产；

（三）外国投资者通过其他方式在境内投资。

第三条国家建立外商投资安全审查工作机制（以下简称工作机制），负责组织、协调、指导外商投资安全审查工作。

工作机制办公室设在国家发展改革委，由国家发展改革委、商务部牵头，承担外商投资安全审查的日常工作。

第四条下列范围内的外商投资，外国投资者或者境内相关当事人（以下统称当事人）应当在实施投资前主动向工作机制办公室申报：

（一）投资军工、军工配套等关系国防安全的领域，以及在军事设施和军工设施周边地域投资；

（二）投资关系国家安全的重要农产品、重要能源和资源、重大装备制造、重要基础设施、重要运输服务、重要文化产品与服务、重要信息技术和互联网产品与服务、重要金融服务、关键技术以及其他重要领域，并取得所投资企业的实际控制权。

前款第二项所称取得所投资企业的实际控制权，包括下列情形：

(一) 外国投资者持有企业50%以上股权；

(二) 外国投资者持有企业股权不足50%，但其所享有的表决权能够对董事会、股东会或者股东大会的决议产生重大影响；

(三) 其他导致外国投资者能够对企业的经营决策、人事、财务、技术等产生重大影响的情形。

对本条第一款规定范围（以下称申报范围）内的外商投资，工作机制办公室有权要求当事人申报。

第五条当事人向工作机制办公室申报外商投资前，可以就有关问题向工作机制办公室进行咨询。

第六条当事人向工作机制办公室申报外商投资，应当提交下列材料：

(一) 申报书；

(二) 投资方案；

(三) 外商投资是否影响国家安全的说明；

(四) 工作机制办公室规定的其他材料。

申报书应当载明外国投资者的名称、住所、经营范围、投资的基本情况以及工作机制办公室规定的其他事项。

工作机制办公室根据工作需要，可以委托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有关部门代为收取并转送本条第一款规定的材料。

第七条工作机制办公室应当自收到当事人提交或者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有关部门转送的符合本办法第六条规定的材料之日起15个工作日内，对申报的外商投资作出是否需要进行安全审查的决定，并书面通知当事人。工作机制办公室作出决定前，当事人不得实施投资。

工作机制办公室作出不需要进行安全审查决定的，当事人可以实施投资。

第八条外商投资安全审查分为一般审查和特别审查。工作机制办

公室决定对申报的外商投资进行安全审查的，应当自决定之日起30个工作日内完成一般审查。审查期间，当事人不得实施投资。

经一般审查，认为申报的外商投资不影响国家安全的，工作机制办公室应当作出通过安全审查的决定；认为影响或者可能影响国家安全的，工作机制办公室应当作出启动特别审查的决定。工作机制办公室作出的决定应当书面通知当事人。

第九条工作机制办公室决定对申报的外商投资启动特别审查的，审查后应当按照下列规定作出决定，并书面通知当事人：

（一）申报的外商投资不影响国家安全的，作出通过安全审查的决定；

（二）申报的外商投资影响国家安全的，作出禁止投资的决定；通过附加条件能够消除对国家安全的的影响，且当事人书面承诺接受附加条件的，可以作出附条件通过安全审查的决定，并在决定中列明附加条件。

特别审查应当自启动之日起60个工作日内完成；特殊情况下，可以延长审查期限。延长审查期限应当书面通知当事人。审查期间，当事人不得实施投资。

第十条工作机制办公室对申报的外商投资进行安全审查期间，可以要求当事人补充提供相关材料，并向当事人询问有关情况。当事人应当予以配合。

当事人补充提供材料的时间不计入审查期限。

第十一条工作机制办公室对申报的外商投资进行安全审查期间，当事人可以修改投资方案或者撤销投资。

当事人修改投资方案的，审查期限自工作机制办公室收到修改后的投资方案之日起重新计算；当事人撤销投资的，工作机制办公室终止审查。

第十二条工作机制办公室对申报的外商投资作出通过安全审查决定的，当事人可以实施投资；作出禁止投资决定的，当事人不得实施投资，已经实施的，应当限期处分股权或者资产以及采取其他必要措

施，恢复到投资实施前的状态，消除对国家安全的影响；作出附条件通过安全审查决定的，当事人应当按照附加条件实施投资。

第十三条外商投资安全审查决定，由工作机制办公室会同有关部门、地方人民政府监督实施；对附条件通过安全审查的外商投资，可以采取要求提供有关证明材料、现场检查等方式，对附加条件的实施情况进行核实。

第十四条工作机制办公室对申报的外商投资作出不需要进行安全审查或者通过安全审查的决定后，当事人变更投资方案，影响或者可能影响国家安全的，应当依照本办法的规定重新向工作机制办公室申报。

第十五条有关机关、企业、社会团体、社会公众等认为外商投资影响或者可能影响国家安全的，可以向工作机制办公室提出进行安全审查的建议。

第十六条对申报范围内的外商投资，当事人未依照本办法的规定申报即实施投资的，由工作机制办公室责令限期申报；拒不申报的，责令限期处分股权或者资产以及采取其他必要措施，恢复到投资实施前的状态，消除对国家安全的影响。

第十七条当事人向工作机制办公室提供虚假材料或者隐瞒有关信息的，由工作机制办公室责令改正；提供虚假材料或者隐瞒有关信息骗取通过安全审查的，撤销相关决定；已经实施投资的，责令限期处分股权或者资产以及采取其他必要措施，恢复到投资实施前的状态，消除对国家安全的影响。

第十八条附条件通过安全审查的外商投资，当事人未按照附加条件实施投资的，由工作机制办公室责令改正；拒不改正的，责令限期处分股权或者资产以及采取其他必要措施，恢复到投资实施前的状态，消除对国家安全的影响。

第十九条当事人有本办法第十六条、第十七条、第十八条规定情形的，应当将其作为不良信用记录纳入国家有关信用信息系统，并按照国家有关规定实施联合惩戒。

第二十条国家机关工作人员在外商投资安全审查工作中，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泄露国家秘密或者其所知悉的商业秘密的，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二十一条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台湾地区投资者进行投资，影响或者可能影响国家安全的，参照本办法的规定执行。

第二十二条外国投资者通过证券交易所或者国务院批准的其他证券交易场所购买境内企业股票，影响或者可能影响国家安全的，其适用本办法的具体办法由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会同工作机制办公室制定。

第二十三条本办法自公布之日起三十日后施行。

5.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 규정

[不可靠实体清单规定(2020年9月19日起施行,商务部令)]

第一条 为了维护国家主权、安全、发展利益,维护公平、自由的国际经贸秩序,保护中国企业、其他组织或者个人的合法权益,根据《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中华人民共和国国家安全法》等有关法律,制定本规定。

第二条 国家建立不可靠实体清单制度,对外国实体在国际经贸及相关活动中的下列行为采取相应措施:

(一) 危害中国国家主权、安全、发展利益;

(二) 违反正常的市场交易原则,中断与中国企业、其他组织或者个人的正常交易,或者对中国企业、其他组织或者个人采取歧视性措施,严重损害中国企业、其他组织或者个人合法权益。

本规定所称外国实体,包括外国企业、其他组织或者个人。

第三条 中国政府坚持独立自主的对外政策,坚持互相尊重主权、互不干涉内政和平等互利等国际关系基本准则,反对单边主义和保护主义,坚决维护国家核心利益,维护多边贸易体制,推动建设开放型世界经济。

第四条 国家建立中央国家机关有关部门参加的工作机制(以下简称工作机制),负责不可靠实体清单制度的组织实施。工作机制办公室设在国务院商务主管部门。

第五条 工作机制依职权或者根据有关方面的建议、举报,决定是否对有关外国实体的行为进行调查;决定进行调查的,予以公告。

第六条 工作机制对有关外国实体的行为进行调查,可以采取询问有关当事人、查阅或者复制相关文件、资料以及其他必要的方式。调查期间,有关外国实体可以陈述、申辩。

工作机制可以根据实际情况决定中止或者终止调查;中止调查决定所依据的事实发生重大变化的,可以恢复调查。

第七条 工作机制根据调查结果，综合考虑以下因素，作出是否将有关外国实体列入不可靠实体清单的决定，并予以公告：

- (一) 对中国国家主权、安全、发展利益的危害程度；
- (二) 对中国企业、其他组织或者个人合法权益的损害程度；
- (三) 是否符合国际通行经贸规则；
- (四) 其他应当考虑的因素。

第八条 有关外国实体的行为事实清楚的，工作机制可以直接综合考虑本规定第七条规定的因素，作出是否将其列入不可靠实体清单的决定；决定列入的，予以公告。

第九条 将有关外国实体列入不可靠实体清单的公告中可以提示与该外国实体进行交易的风险，并可以根据实际情况，明确该外国实体改正其行为的期限。

第十条 对列入不可靠实体清单的外国实体，工作机制根据实际情况，可以决定采取下列一项或者多项措施（以下称处理措施），并予以公告：

- (一) 限制或者禁止其从事与中国有关的进出口活动；
- (二) 限制或者禁止其在中国境内投资；
- (三) 限制或者禁止其相关人员、交通运输工具等入境；
- (四) 限制或者取消其相关人员在中国境内工作许可、停留或者居留资格；
- (五) 根据情节轻重给予相应数额的罚款；
- (六) 其他必要的措施。

前款规定的处理措施，由有关部门按照职责分工依法实施，其他有关单位和个人应当配合实施。

第十一条 将有关外国实体列入不可靠实体清单的公告中明确有关外国实体改正期限的，在期限内不对其采取本规定第十条规定的处理措施；有关外国实体逾期不改正其行为的，依照本规定第十条的规

定对其采取处理措施。

第十二条 有关外国实体被限制或者禁止从事与中国有关的进出口活动，中国企业、其他组织或者个人在特殊情况下确需与该外国实体进行交易的，应当向工作机制办公室提出申请，经同意可以与该外国实体进行相应的交易。

第十三条 工作机制根据实际情况，可以决定将有关外国实体移出不可靠实体清单；有关外国实体在公告明确的改正期限内改正其行为并采取措施消除行为后果的，工作机制应当作出决定，将其移出不可靠实体清单。

有关外国实体可以申请将其移出不可靠实体清单，工作机制根据实际情况决定是否将其移出。

将有关外国实体移出不可靠实体清单的决定应当公告；自公告发布之日起，依照本规定第十条规定采取的处理措施停止实施。

第十四条 本规定自公布之日起施行。

6. 외국 법률 · 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저지 방법

[阻断外国法律与措施不当域外适用办法 (2021 年 1 月 9 日起施行, 商务部令)]

第一条为了阻断外国法律与措施不当域外适用对中国的影响, 维护国家主权、安全、发展利益, 保护中国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的合法权益, 根据《中华人民共和国国家安全法》等有关法律, 制定本办法。

第二条本办法适用于外国法律与措施的域外适用违反国际法和国际关系基本准则, 不当禁止或者限制中国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与第三国(地区)及其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进行正常的经贸及相关活动的情形。

第三条中国政府坚持独立自主的对外政策, 坚持互相尊重主权、互不干涉内政和平等互利等国际关系基本准则, 遵守所缔结的国际条约、协定, 履行承担的国际义务。

第四条国家建立由中央国家机关有关部门参加的工作机制(以下简称工作机制), 负责外国法律与措施不当域外适用的应对工作。工作机制由国务院商务主管部门牵头, 具体事宜由国务院商务主管部门、发展改革部门会同其他有关部门负责。

第五条中国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遇到外国法律与措施禁止或者限制其与第三国(地区)及其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正常的经贸及相关活动情形的, 应当在30日内向国务院商务主管部门如实报告有关情况。报告人要求保密的, 国务院商务主管部门及其工作人员应当为其保密。

第六条有关外国法律与措施是否存在不当域外适用情形, 由工作机制综合考虑下列因素评估确认:

- (一) 是否违反国际法和国际关系基本准则;
- (二) 对中国国家主权、安全、发展利益可能产生的影响;
- (三) 对中国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合法权益可能产生的影响;
- (四) 其他应当考虑的因素。

第七条工作机制经评估，确认有关外国法律与措施存在不当域外适用情形的，可以决定由国务院商务主管部门发布不得承认、不得执行、不得遵守有关外国法律与措施的禁令（以下简称禁令）。

工作机制可以根据实际情况，决定中止或者撤销禁令。

第八条中国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可以向国务院商务主管部门申请豁免遵守禁令。

申请豁免遵守禁令的，申请人应当向国务院商务主管部门提交书面申请，书面申请应当包括申请豁免的理由以及申请豁免的范围等内容。国务院商务主管部门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30日内作出是否批准的决定；情况紧急时应当及时作出决定。

第九条当事人遵守禁令范围内的外国法律与措施，侵害中国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合法权益的，中国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可以依法向人民法院提起诉讼，要求该当事人赔偿损失；但是，当事人依照本办法第八条规定获得豁免的除外。

根据禁令范围内的外国法律作出的判决、裁定致使中国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遭受损失的，中国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可以依法向人民法院提起诉讼，要求在该判决、裁定中获益的当事人赔偿损失。

本条第一款、第二款规定的当事人拒绝履行人民法院生效的判决、裁定的，中国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可以依法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

第十条工作机制成员单位应当依照各自职责，为中国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应对外国法律与措施不当域外适用提供指导和服务。

第十一条中国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根据禁令，未遵守有关外国法律与措施并因此受到重大损失的，政府有关部门可以根据具体情况给予必要的支持。

第十二条对外国法律与措施不当域外适用，中国政府可以根据实际情况和需要，采取必要的反制措施。

第十三条中国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未按照规定如实报告有关情况或者不遵守禁令的，国务院商务主管部门可以给予警告，责令限

期改正，并可以根据情节轻重处以罚款。

第十四条国务院商务主管部门工作人员未按照规定为报告有关情况的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保密的，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十五条中华人民共和国缔结或者参加的国际条约、协定规定的外国法律与措施域外适用情形，不适用本办法。

第十六条本办法自公布之日起施行。

[번역문]

1. 수출통제법 (2020.12.1 일 시행)

제 1 장 총칙

제1조 국가의 안전과 이익 수호, 확산방지 등 국제의무를 이행하며, 수출 통제를 강화 및 규제하기 위하여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국가의 이중용도품목, 군용품, 핵 및 기타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수호하고, 확산방지 등 국제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관련된 화물, 기술, 서비스 등 품목(이하 '통제대상품목'이라고 함)에 대한 수출통제는 본 법을 적용한다.

전항의 '통제대상품목'은 품목에 관련된 기술 자료 등 데이터가 포함된다.

본 법에서 지칭하는 수출통제란 국가가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안에서 국경 밖으로 통제대상품목을 이전하는 것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민, 법인과 법인이 아닌 조직이 외국 조직과 개인에게 통제대상품목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본 법에서 지칭하는 이중용도품목이란 민간 용도가 있는 동시에 군사 용도가 있거나 군사적 잠재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며, 특히 대량살상무기 및 이를 탑재하는 운반수단의 설계, 개발, 생산, 사용에 쓰일 수 있는 화물, 기술과 서비스이다.

본 법에서 지칭하는 군용품이란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비, 전용 생산설비 및 기타 관련 화물, 기술과 서비스이다.

본 법에서 지칭하는 핵이란 핵물질, 핵설비, 원자로용 비핵물질 및 이와 관련된 기술과 서비스이다.

제3조 수출통제 업무는 총체적인 국가안전관을 고수하고, 국제 평화를 수호하며, 안전과 발전을 총괄하도록, 수출통제 관리와 서비스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4조 국가는 통일된 수출통제제도를 시행하고, 통제 리스트, 명부 또는 목록(이하 '통제 리스트'라고 함) 제정, 수출허가 시행 등의 방식을 통하여 관리한다.

제5조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의 수출통제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이하 ‘국가 수출통제관리부문’이라고 함)는 직책에 따라 수출통제 관련 업무를 분담한다.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의 기타 관련 부서는 직책에 따라 수출통제 업무를 분담한다.

국가는 수출통제 업무 협조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수출통제 업무의 중대 사항에 총괄적으로 협조한다. 국가수출통제관리부문과 국무원 관련 부서는 반드시 긴밀하게 협력하여 정보 공유를 강화해야 한다.

국가수출통제관리부문은 관련 부서와 함께 수출통제 전문가 자문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수출통제 업무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국가수출통제관리부문은 적절한 시기에 관련 업계의 수출통제지침을 발표하고 수출업자들이 수출통제에 관한 내부준법제도를 수립하고 경영을 규범화하도록 안내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수출통제 관련 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 국가는 수출통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수출통제에 관한 국제규칙의 제정에 참여한다.

제7조 수출업자는 법에 따라 관련 상회, 협회 등의 업계별 자율조직을 설립하거나 참여할 수 있다.

관련 상회, 협회 등 업계별 자율조직은 법률, 행정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규정에 따라 그 회원에게 수출통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협조성과 자율성을 발휘해야 한다.

제 2 장 통제정책, 통제리스트 및 통제조치

제 1 절 일반규정

제8조 국가수출통제관리부문은 관련 부서와 함께 수출통제정책을 제정하고, 그 중 중요한 정책은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거나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국가수출통제관리부문은 통제대상품목의 수출 목적지인 국가와 지역을 평가하여, 위험등급을 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통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국가수출통제관리부문은 본 법과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수출통제정책에 근거하여 규정된절차에 따라 관련부서와 함께 통제대상품목의 수출통제리스트를 제정하거나 조정하고 이를 즉시 공표한다.

국가의 안전과 이익수호 및 확산방지 등 국제의무의이행 필요에 따라 국가수출통제관리부문은 국무원의 비준을 받거나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수출통제리스트 이외의화물, 기술, 서비스에 대해 임시 통제를 실시할 수 있고 그 사실을 공고한다. 임시 통제 시행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임시 통제 시행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적시에 평가를 거쳐 평가 결과에 따라 임시 통제를 취소 또는 연장하거나 임시통제대상품목을 수출통제리스트에 포함하도록 결정한다.

제10조 국가의 안전과 이익수호 및 확산방지 등 국제의무의이행 필요에 따라 국가수출통제관리부문은 국무원의 비준을 받거나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관련 부서와 함께 해당 통제대상품목의 수출을 금지하거나, 관련 통제대상품목을 특정 국가나 지역, 특정 조직이나 개인에게 수출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제11조 통제대상품목의 수출 업무에 종사하는 수출업자는 본 법과 관련된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법에 따라 관련 통제대상품목 수출경영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제12조 국가는 통제대상품목의 수출에 대해 허가제도를 시행한다.

수출통제리스트상의 통제대상품목 또는 임시통제대상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업자는 국가수출통제관리부문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수출통제리스트상의 통제대상품목과 임시통제대상품목 이외의 화물, 기술 및 서비스 수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리스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을 수출업자가 알고 있었거나 의무적으로 알았어야 하거나, 국가수출통제관리부문의 통지를 받은 경우, 수출업자는 국가수출통제관리부문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1) 국가의 안전과 이익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

(2) 대량살상무기 및 이를 탑재하는 운반수단의 설계, 개발, 생산 또는 사용에 쓰이는 경우

(3) 테러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

수출업자가 수출할 화물, 기술, 서비스가 본 법에서 규정하는 통제대상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없어 국가수출통제관리부문에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수출통제관리부문은 적시에 답변하여야 한다.

제13조 국가수출통제관리부문은 다음 각 항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출업자의 수출통제대상품목 신청을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 (1) 국가의 안전과 이익
- (2) 국제의무와 대외적 약속
- (3) 수출 유형
- (4) 통제대상품목 민감도
- (5) 수출 목적지인 국가 또는 지역
- (6) 최종 사용자와 최종 용도
- (7) 수출업자와 관련된 신용 기록
- (8)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요소

제14조 수출업자가 수출통제 내부준법제도를 수립하고 그 제도를 양호하게 운영하는 경우, 국가수출통제관리부문은 해당 수출업자의 관련 통제대상품목 수출에 대하여일반허가 등 간편 조치를 제공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수출통제관리부문이 규정한다.

제15조 수출업자는 국가수출통제관리부문에 통제대상품목의 최종 사용자와 최종 용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증명 문서는 최종 사용자 또는 최종 사용자가 소재한 국가 및 지역의 정부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제16조 통제대상품목의 최종 사용자는 국가수출통제관리부문의 허가 없이 해당 통제대상품목의 최종용도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을 것을 약속해야 한다.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최종 사용자 또는 최종 용도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을 발견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즉시 국가수출통제관리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제17조 국가수출통제관리부문은 통제대상품목의 최종 사용자와 최종 용도에 대한 리스크관리제도를 수립하고, 통제대상품목의 최종 사용자와 최종 용도에 대하여 평가, 심사하며, 최종 사용자와 최종 용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제18조 국가수출통제관리부문은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업자 및 최종 사용자에 대하여 통제명단을 작성한다.

- (1) 최종 사용자 또는 최종 용도에 관련된 관리 요구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2) 국가 안전과 이익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3) 통제대상품목이 테러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

통제명단에 열거된 수입업자와 최종 사용자에 대하여 국가수출통제관리부문은 관련 통제대상품목의 거래에 대한 금지또는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관련 통제대상품목의 수출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수출업자는 규정을 위반하여 통제명단에 열거된 수입업자 및 최종 사용자와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수출업자가 특수한 상황에서 통제명단에 포함된 수입업자 및 최종 사용자와 거래 하여야만 하는 경우, 국가수출통제관리부문에 신청할 수 있다.

통제명단에 열거된 수입자 및 최종 사용자가 조치를 취하여, 제1항에서 규정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통제명단에서 제외해 줄 것을 국가수출통제관리부문에 신청할 수 있다. 국가수출통제관리부문은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통제명단에 열거된 수입자, 최종 사용자를 통제명단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제19조 수출화물의 발송인 혹은 통관대행업체가 수출통제화물을 수출하는 경우, 세관에 국가수출통제관리부문이 발급한 허가증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고, 국가의 관련 규정대로 통관 수속을 진행해야 한다.

수출화물의 발송인이 국가수출통제관리부문에서 발급한 허가증을 세관에 제출하지 아니 하고, 수출화물이 수출통제범위에 속할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를 세관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 세관은 수출화물의 발송인에게 질의를 하여야

한다. 세관은 국가수출통제관리부문에 감별을 신청할 수 있고 국가수출통제 관리부문의 감별 결과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처리한다. 감별 기간 또는 질의 기간 중에 세관은 해당 수출화물을 통관하지 아니 한다.

제20조 그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수출업자의 수출통제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대행, 화물 운송, 배달, 통관수속, 제3자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금융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 절 이중용도품목 수출관리

제21조 수출업자는 국가이중용도품목수출통제관리부문에 이중용도품목 수출을 신청할 때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사실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국가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관리부문은 이중용도품목 수출신청을 접수한 뒤,본 법과 관련된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단독으로 또는 관련 부서와 함께 이중용도품목 수출신청을 심사하여, 법정기한 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허가 결정이 내려지면, 증서발급기관이 일괄적으로 수출 허가증을 발급한다.

제 3 절 군용품 수출관리

제23조 국가는 군용품 수출에 대하여 전문경영제도를 시행한다. 군용품 수출업자는 군용품수출전문경영 자격을 취득해야 하고, 심사로 확정된 경영범위 내에서 군용품 수출경영활동을 하여야 한다.

군용품 수출전문자격은 국가 군용품수출통제관리부문에서 심사하고 비준한다.

제24조 군용품 수출업자는 통제정책과 제품속성에 근거하여 국가군용품수출통제관리부문에 군용품 수출 등록, 군용품 수출항목,군용품 수출계약에 대한심사 및 비준 절차를 신청하여야 한다.

국가군용품수출통제관리부문은 중요 군용품 수출 등록, 중요 군용품 수출 항목, 중요 군용품 수출 계약을 관련부서와 함께 심사하고 국무원, 중앙군사위

원회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25조 군용품 수출업자는 군용품을 수출하기 전에 국가군용품수출통제관리부문에 군용품 수출허가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군용품 수출업자는 군용품을 수출할 때 국가군용품수출통제관리부문에서 발급한 허가증을 세관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통관수속을 해야 한다.

제26조 군용품 수출업자는 허가를 받은 군용품 운송기업에게 군용품 운송 및 관련 업무를 위탁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군용품수출통제관리부문이 관련 부서와 함께 규정한다.

제27조 군용품 수출업자나 과학연구 생산 단위가 국제적인 군용품 전람회에 참가할 경우, 절차에 따라 국가 군용품 수출통제 관리부문에 심사승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제 3 장 감독관리

제28조 국가수출통제관리부문은 통제대상품목의 수출활동에 대해 법에 따라 감독및 검사를 실시한다.

국가수출통제관리부문은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를 조사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피조사자의 영업장소 또는 기타 관련된 장소에 진입하여 검사
- (2) 피조사자, 이해관계자 및 기타 관련된 조직 또는 개인에게 조사대상 사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
- (3) 피조사자, 이해관계자 및 기타 관련된 조직 또는 개인에 관한 증빙서류, 계약서, 회계장부, 업무 서신 등의 문서, 자료의 열람과 복제
- (4) 수출용 운송수단을 검사하여 의심스러운 수출품목의 적재를 제지하고 불법수출품 반송하도록 명령
- (5) 사건 관련 품목을 봉인, 압류

(6) 피조사자의 은행계좌를 조회

전조 제5항과 제6항의 조치를 취하려면 국가수출통제관리부문 책임자의 서면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29조 국가수출통제관리부문을 법에 따라 직책을 이행하며 국무원 관련 부서, 지방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서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국가수출통제관리부문을 법에 따라 단독으로 또는 관련부서와 함께 감독검사와 조사업무를 실시하고, 관련 조직과 개인은 조사에 협조해야 하며 거절이나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

관련 국가기관 및 그 업무자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국가기밀, 영업비밀, 개인사생활과 개인정보에 대하여 법에 따라 비밀유지 의무를 갖는다.

제30조 통제대상품목에 대한 수출관리를 강화하고, 통제대상품목 수출의 위법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수출통제관리부문을 감독관리 관련 면담, 경고장 발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1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를 받는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조직 및 개인은 국가수출통제관리부문에 신고할 수 있으며, 국가수출통제관리부문을 신고를 받은 후 법에 따라 즉시 처리하여야 하고 신고자를 위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32조 국가수출통제관리부문을 체결하였거나 참가한 국제조약 또는 호혜평등 원칙에 따라 다른 국가나 지역, 국제기구 등과 수출통제 관련 협력과 교류를 진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조직과 개인이 경외에 수출통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출통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4 장 법적책임

제33조 수출업자가 통제대상품목과 관련된 수출경영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통제대상품목의 수출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경고하고, 위법행위

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경영액이 50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경영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법경영액이 없거나 위법경영액이 50만 위안 미만인 경우 50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4조 수출업자가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위법행위 정지 명령을 내리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경영액이 50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경영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법경영액이 없거나 50만 위안 미만인 경우, 50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상황이 엄중할 경우, 휴업정비를 명령하고 관련 통제품목의 수출경영 자격을 취소할 수도 있다.

- (1) 허가없이 임의로 통제대상품목을 무단으로 수출하는 경우
- (2) 수출허가증에 규정된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통제대상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 (3) 수출이 금지된 통제대상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제35조 사기, 뇌물 등 부정한 수단으로 통제대상품목 수출허가증을 취득하거나 통제대상품목 수출허가증을 불법으로 양도 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고 수출허가증을 회수하며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경영액이 20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경영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법경영액이 없거나 20만 위안 미만인 경우, 20만 위안 이상 20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통제대상품목 수출허가증을 위조, 변조, 매매하는 경우,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위법경영액이 5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경영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법경영액이 없거나 위법경영액이 5만 위안 미만인 경우,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6조 수출업자가 수출통제 위법행위에 종사하는 것을 알면서도 수출대행, 화물 운송, 택배, 통관,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금융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해 경고하고, 위법행위 정지 명령을 내리며,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경영액이 10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경영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법경영액이 없거나 10만위안 미만인 경우,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7조 수출업자가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제명단에 열거된 수입자 및 최종 사용자와 거래하는 경우, 수출업자에 대해 경고하고, 위법행위 정지 명령을 내리며,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경영액이 50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경영액의 10배 이상 2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법경영액이 없거나 50만 위안 미만인 경우, 50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상황이 엄중할 경우, 업무정지를 명령하고 해당 통제대상품목의 수출경영 자격을 취소할 수도 있다.

제38조 수출업자가 감독 및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경고와 함께 10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상황이 엄중할 경우, 휴업정비를 명령하고 해당 통제대상품목의 수출경영 자격을 취소할 수도 있다.

제39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수출업자의 경우 국가수출통제관리부문은 처벌 결정이 발효된 날로부터 5년간 해당 수출업자의 수출허가 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주요 관리인원과 기타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인원에 대하여 5년간 수출업 관련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으며, 수출통제 위반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수출업 관련 경영활동에 평생 종사하지 못한다.

국가수출통제관리부문은 수출업자가 본 법을 위반한 경우를 법에 따라 신용기록에 포함시킨다.

제40조 본 법에서 규정하는 수출통제 위법행위는 국가수출통제관리부문에서 처벌하며,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에서 처벌해야 하는 경우에는 본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41조 관련 조직이나 개인이 국가수출통제관리부문의 수출허가거절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심판 결정을 최종 재결로 한다.

제42조 수출통제관리에 종사하는 국가 업무담당자가 직무유기, 사리사욕추구, 직권남용을 하는 경우 본 법에 따라 처분한다.

제43조 본 법의 수출통제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안전과 이익을 해치는 경우, 본 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하는 외에도 관련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고 처벌해야 한다.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가 수출을 금지하는 통제대상품목을 수출하거나 허가없이 통제대상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4조 중화인민공화국 경외의 조직과 개인이 본 법의 수출통제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과 이익을 해치고 확산방지 등 국제의무의 이행을 방해하는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하고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제 5 장 부칙

제45조 통제대상품목의 통관, 환적, 운송, 재수출 또는 보세구역 및 수출가공구역 등의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과 수출감독창고, 보세물류센터 등 보세감독장소로부터 경외로 수출하는 것은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46조 핵 및 기타 통제대상품목의 수출에 대해서는 본 법에 규정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47조 무장세력의 해외 사용, 대외군사교류, 군사지원 등에 사용되는 군용품의 수출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48조 여하한 국가나 지역이 수출통제조치를 남용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은 실제 상황에 따라 해당 국가나 지역에 대해 대등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9조 본 법은 2020년12월1일부터 시행한다.

2. 중국 수출 제한 · 금지 기술 목록

(2020.8.28 일 시행, 상무부 · 과학기술부 공고)²¹

번호	2008 년 목록	2020 년 목록
수출금지 부분		
축산업		
05 03 01 J	축산품종의 번식기술	축산품종의 번식기술
06 03 02 J	미생물 배양기술	
05 03 03 J	중국 특유의 증자원기술	중국 특유의 증자원기술
05 03 04 J	누에류 품종, 번식 및 누에고치 채집 가공 이용 기술 (기술 요점) 1. 누에 일반 품종의 원종, 원원종, 모종 2. 작견(柞蚕), 피마자누에(蓖麻蚕), 천잠(天蚕) 등 누에류 및 근연견사(近缘绢丝) 곤충 이용 기술	누에류 품종, 번식 및 누에고치 채집 가공 이용 기술 (기술 요점) 1. 1대 누에 품종 교잡 이외의 누에 유전 자원 2. 작견(柞蚕), 피마자누에(蓖麻蚕), 천잠(天蚕) 등 누에류 및 근연견사(近缘绢丝) 곤충 이용 기술
어업		
05 04 01 J	수산품종의 번식기술	수산품종의 번식기술
농, 림, 목, 어업 서비스업, 농, 림, 목, 어업 서비스업		
05 05 01 J	녹색식물 성장조절물질 제작기술	녹색식물 성장조절물질 제작기술
유색금속광 채산업		
05 09 01 J	채광 공정 기술	채광 공정 기술
농부식품 가공업		
05 13 01 J	육류가공기술	육류가공기술
음료 제조업		
05 15 01 J	음료 생산 기술	음료 생산 기술

21 기술 목록은 (1) 번호, (2) 기술명칭, (3) 기술 요점으로 구성되었는데, 본 표에서는 주로 번호와 기술명칭을 기재하였으며, 2020 년 목록과 2008 년 목록을 대비하여 기술 요점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기술 요점까지 기재하였다.

제지 및 지제품업		
05 22 01 J	제지 기술	제지 기술
화학원료 및 화학제품 제조업		
05 26 01 J	불꽃,폭죽 생산 기술	불꽃,폭죽 생산 기술
의약 제조업		
05 27 01 J		
06 27 02 J	리보플라빈(VB2) 생산 공법	
05 27 03 J	중약재 자원 및 생산 기술	중약재 자원 및 생산 기술
05 27 04 J	중약 음편(饮片) 포제(炮制) 기술	중약 음편(饮片) 포제(炮制) 기술
06 27 06 J	화학합성 및 반합성 약물 생산 기술	
비금속 광물제품업		
05 31 01 J	비결정 무기 비금속 재료 생산 기술	비결정 무기 비금속 재료 생산 기술
05 31 02 J	저차원 무기 비금속 재료 생산 기술	저차원 무기 비금속 재료 생산 기술
유색금속 제련 및 압연 가공업		
05 33 01 J	유색금속 아금 기술	유색금속 아금 기술
05 33 02 J	희토(稀土)의 추출,가공,이용기술	희토(稀土)의 추출, 가공, 이용기술
전용설비 제조업		
05 36 01 J	농업용 기계 제조 기술	농업용 기계 제조 기술
교통 운수 설비 제조업		
05 37 01 J	항공기 관측 제어 기술 (기술 요점) 위성 및 그 탑재 무선 전파 원격 측정의 암호 화 기술	항공기 관측 제어 기술 (기술 요점) 중국에서 사용하는 위성 및 그 탑재 무선 원격 측정 코드와 암호화 기술
05 37 02 J	항공기 설계 및 제조 기술	항공기 설계 및 제조 기술

통신장비,컴퓨터 및 기타 전자설비 제조업		
05 40 01 J	집적회로 제조 기술	집적회로 제조 기술
05 40 02 J	로봇 제조 기술	로봇 제조 기술
계측기 및 문화,사무용 기계 제조업		
05 41 01 J	지도 제작 기술 <기술 요점> 직접 출력 비례척)= 1:10만인중국 지형도 요 소의 그래픽 제품 및 그 응용 기술	지도제작 기술 <기술 요점> 직접 출력 비례척)= 1:10만인 중국 지형요소 의 그래픽 제품
공예품 및 기타 제조업		
05 42 01 J	서화묵(书画墨),팔보인주(八宝印泥) 제조 기술	서화묵(书画墨), 팔보인주(八宝印泥) 제조 기술
건축장식업		
05 49 01 J	중국 전통 건축기술	중국 전통 건축기술
전기 통신 및 기타 정보 전송 서비스업		
05 60 01 J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
05 60 02 J	공간 데이터 전송 기술 <기술 요점> 다음 중 하나와 관련되는위성 통제 정보 전송 암호화 기술: 1.비밀 원리, 방안및 회로 설계 기술 2. 암호화 및 암호해독한 파일, 하드웨어	공간 데이터 전송 기술 <기술 요점> 다음 중 하나와 관련되는 위성데이터 암호화 기 술: 1. 비밀 원리, 방안 및 회로 설계 기술 2. 암호화 및 암호해독한 파일, 하드웨어
05 60 03 J	위성 응용 기술 <기술 요점> 쌍성(双星) 항법 위치 시스템 정보 전송 암호 화 기술	위성 응용 기술 <기술 요점> 베이더우(北斗) 위성 항법 시스템 정보 전송 암호 화 기술
전문기술 서비스업		
05 76 01 J	대지측량 기술	대지측량 기술
보건		
05 85 01 J	중의 의료 기술	중의 의료 기술
수출제한 부분		
농업		

05 01 01 X	농작물 (목초 포함)번식 기술 (기술 요점) 1. 식량·면화·유류 작물의 양계(兩系), 삼계(三系)교배 우위 이용 제종(制種)기술 2. 현성핵불임(顯性核不育油菜)삼계(三系)제종 기술 3. 야채 자기불화합계(自交不亲和系) 및 음성 불임계(雌性不育系) 선종 및 응용 기술 4. 옥수수 꽃밥 배양기(培養基)제조공법 5. 발채(發菜) 인공제종(制種)증식기술	농작물 (목초 포함) 유전물질(種質) 자원 및 그 번식 기술 (기술 요점) 1. 식량·면화·유류 작물의 양계(兩系), 삼계(三系)교배 우위 이용 제종(制種)기술 2. 현성핵불임(顯性核不育油菜)삼계(三系)제종 기술 3. 야채 자기불화합계(自交不亲和系) 및 음성 불임계(雌性不育系) 선종 및 응용 기술 4. 옥수수 꽃밥 배양기(培養基)제조공법 5. 발채(發菜) 인공제종(制種)증식기술 6. 대외적으로 제공하는 농작물 유전물질 자원 분류 목록에 열거된 농작물 (목초 포함)유전물질 자원 및 그 번식 기술
05 01 02 X	경제작물 재배 번식 기술	경제작물 재배 번식 기술
18 01 03 X		농업 야생식물 인공 번식 기술 (기술 요점) 1. <국가 중점 보호야생 식물 목록>에 열거된 농업 관련 부서에서 주관하는 1급 야생 식물 인공 번식 기술 2.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등재된 농업 야생 식물 인공 번식 기술
18 01 04 X		유전자 공학(유전자 및 캐리어) (기술 요점) 1. 새로 발견된 식물 음성불임 유전자, 회복유전자 및 캐리어 2. 새로 발견된 항병(抗病), 항충(抗虫) 유전자 및 캐리어 3. 새로 발견된 스트레스역성(抗逆) 유전자 및 캐리어 4. 새로 발견된 품질(品質) 유전자 및 캐리어 5. 새로 발견된 생산량 관련 유전자 및 캐리어 6. 새로 발견된 기타 중요한 유전자 및 캐리어 7. 특유 유전자 조작 기술
임업		
05 02 01 X	임목 유전물질(種質) 자원 및 그 번식 기술	임목 유전물질(種質) 자원 및 그 번식 기술
05 02 02 X	원림(園林)식물,관상용 식물 번식 기술	원림(園林)식물,관상용 식물 번식 기술
05 02 03 X	야생동물 인공 번식 및 보호 기술	야생동물 인공 번식 및 보호 기술
축산업		

05 03 01 X	축산품종의번식기술	축산 품종의 번식 기술
18 03 02 X		웅산양(絨山羊) 번식 기술 (기술 요점) 교배, 인공수정, 배태(胚胎), 유전자 클론 번식 기술
18 03 03 X		웅산양 품종의 육성 기술 (기술 요점) 내몽고(內蒙古)웅산양, 우주무친(烏珠穆沁)흰웅산양, 한산(罕山)흰웅산양, 요녕(遼寧)웅산양, 쩐란(晉嵐)웅산양, 허시(河西)웅산양 및 서장(西藏)웅산양 모본(母本), 부분(父本)을 교배 개량하여 새로운 품종 육성
어업		
05 04 01 X	수산유전물질(種質) 번식기술 (기술 요점) 4. 쏘가리 인공 육묘(育苗) 및 인공 사료 양식 기술 (1) 쏘가리 인공 육묘 축산(催産) 기술 (2) 치어 미끼(開口餌料) 및 그 동시 배양(同步培養) 기술	수산 유전물질(種質) 번식 기술 (기술 요점) 4. 쏘가리 인공 육묘(育苗) 및 인공 사료 양식 기술 (1) 쏘가리 인공 축산(催産), 육묘 기술 (2) 치어 미끼(開口餌料) 및 그 동시 배양(同步培養) 기술
농, 림, 목, 어업 서비스업		
05 05 01 X	동물약 생산 기술 (기술 요점) 1. 말전염성빈혈(馬傳貧) 약독독종(弱毒毒種) 및 백신 생산 공법 2. 돼지 호흡기 복합 감염증(豬喘氣病) 약독독종 및 백신 생산 공법 3. 산양두바이러스(山羊痘) 약독백신 생산 공법 4. 양두바이러스(羊痘) 독종 및 백신 생산 공법 5. 우폐역(牛肺疫) 약독독종 및 백신 생산 공법 6. 우역(牛疫) 약독백신 생산 공법 7. 돈역(豬瘟) 약독백신 생산 공법 8. 오리페스트(鴨疫) 약독독종 및 백신 생산 공법 9. 소타일레리아병(牛環形泰勒焦虫病) 세포백신(細胞苗) 및 백신 생산 공법 10. 돈단독(豬丹毒) 약독독종 11. 가금콜레라(禽霍亂) 프로폴리스(蜂膠) 불활균백신(滅火菌苗) (1) 프로폴리스보강제(蜂膠佐劑) 생산 기술 (2) 백신 생산 기술 12. 불활화 백신 유화(乳化) 공법 13. 백신 보강제 조제법(配方) 14. 닭 콜레라(禽出敗) B26-T1200 약독 독종 및 백신 생산 공법	

	15.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高致病性禽流感) 백신 생산 공법 16. 구제역(口蹄疫) 백신 생산 공법	
05 05 02 X	가축 사료 및 동물용 성장 조절물질 생산 기술	가축 사료 및 동물용 성장 조절물질 생산 기술
05 05 03 X	축산품 가공 기술	축산품 가공 기술
05 05 04 X	벌류 번식과 벌제품의 채집, 가공 및 이용 기술	벌류 번식과 벌제품의 채집, 가공 및 이용 기술
05 05 05 X	수의 위생 검역 기술	수의 위생 검역 기술
05 05 06 X	삼림 병충해 예방 퇴치 기술	삼림 병충해 예방 퇴치 기술
05 05 07 X	임산 화학제품 가공 기술	임산 화학제품 가공 기술
05-05 08 X	뉴캐슬병 백신 기술	
농부식품 가공업		
05 13 01 X	식량 가공 기술	식량 가공 기술
05 13 02 X	설탕 가공 기술	설탕 가공 기술
05 13 03 X	난제품(蛋品) 가공 기술	난제품 가공 기술
식품 제조업		
05 14 01 X	식품첨가제 생산 기술	식품첨가제 생산 기술
음료 제조업		
05 15 01 X	음료 생산 기술	음료 생산 기술
방직업		
05 17 01 X	천연섬유 제품 방직 및 그 가공 기술	천연섬유 제품 방직 및 그 가공 기술
05 17 02 X	대두 단백질 섬유 제조 기술	대두 단백질 섬유 제조 기술
05 17 03 X	랑향 실크(蔴香綢) 가공 기술	랑향 실크(蔴香綢) 가공 기술

05 17 04 X	섬유 제품 방직 및 그 가공 기술	섬유 제품 방직 및 그 가공 기술
제지 및 지제품업		
05 22 01 X	제지 기술	제지 기술
화학원료 및 화학제품 제조업		
05 26 01 X	<p>화학원료 생산 기술 (기술 요점)</p> <p>1. 시아누르산염화물원스텝(一步法) 생산기술 2. 이온교환법(离子交换法)의파라링스텐산암모늄생산기술 3. 아미노벤젠술폰산대환 정제(精制) 공법 4. 전기 화학적 방법의 호박산 제조 공법</p>	<p>화학원료 생산 기술 (기술 요점)</p> <p>1. 시아누르산염화물원스텝(一步法) 생산기술 2. 유황산 인산 혼합산(硫磷混酸)협동시스템의 회증식 고효율 처리 신기술 3. 아미노벤젠술폰산대환 정제(精制) 공법 4. 전기 화학적 방법의 호박산 제조 공법</p>
05 26 02 X	화학농약 생산 기술	화학농약 생산 기술
05 26 03 X	<p>생물농약 생산 기술 (기술 요점)</p> <p>1. 메뚜기 미소포지충살충제 조제 생산 공법 2. 초원 모충의 방추형(梭形) 다각체 바이러스(多角体病毒) 독종의 예방되 치 및 제제(制剂)의 생산 공법 3. 발리다마이신(井冈霉素)균종 및 생산 기술 4. 니코마이신(华光霉素)균종 및 생산 기술 5. 리우양마이신(浏阳霉素)균종 및 생산 기술 6. 오레오마이신(金核霉素)균종 및 생산 기술 7. 닝난마이신(宁南霉素)균종 및 생산 기술</p>	<p>생물농약 생산 기술 (기술 요점)</p> <p>1. 메뚜기 미소포지충살충제 조제 생산 공법 2. 초원 모충의 방추형(梭形) 다각체 바이러스(多角体病毒) 독종의 예방되 치 및 제제(制剂)의 생산 공법 3. 발리다마이신(井冈霉素)균종 및 생산 기술 4. 니코마이신(华光霉素)균종 및 생산 기술 5. 리우양마이신(浏阳霉素)균종 및 생산 기술 6. 오레오마이신(金核霉素)균종 및 생산 기술 7. 닝난마이신(宁南霉素)균종 및 생산 기술 8. 아버멕틴 균종 및 생산 기술 9. 바실러스 튜링겐시스(Ba균주(菌株))및 생산 기술 10. 고초균 균주 및 생산 기술 11. 카스가마이신균주 및 생산 기술 12. 피리미딘 뉴클레오시드 항생제(농용항생제 120)균주 및 생산 기술 13. 백강균(白僵菌), 녹강균(绿僵菌)균종 및 생산 기술</p>
05 26 04 X	염료 생산 기술	염료 생산 기술
05 26 05 X	도료 생산 기술	도료 생산 기술
05 26 06 X	촉매제 생산 기술	촉매제 생산 기술
05 26 07 X	감광재료 생산 기술	감광재료 생산 기술

05 26 08 X	합성섬유 생산 기술	합성섬유 생산 기술
05 26 09 X	합성수지 및 그 제품 생산 기술	합성수지 및 그 제품 생산 기술
05 26 10 X	공업용 화약 및 그 생산 기술	공업용 화약 및 그 생산 기술
05 26 11 X	공업용 뇌관 생산 기술	공업용 뇌관 생산 기술
의약 제조업		
05 27 01 X	중약재 자원 및 생산기술	중약재 자원 및 생산기술
05 27 02 X	<p>생물 기술 약물 생산 기술 (기술 요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페니실린생산기술 (1) 페니실린 대량생산 균주 (2) 발효단위 $\geq 55,000\mu/ml$ 2. 스트렙토마이신생산 기술 (1) 여과(過濾), 원심(离心), 분리(分离), 정제(精制)공법 (2)발효단위 $\geq 27000\mu/ml$ 혹은 총수율(总收率) $\geq 75\%$의 스트렙토마이신 생산 기술 3. 발효단위 $\geq 25,000\mu/ml$의 세팔로스포린C 대량생산 균주 또는 총수율 $\geq 70\%$의 세팔로스포린C 생산 기술 4. 오레오마이신제조 공법 (1) 오레오마이신 생산 균종 (2) 발효단위 $\geq 20,000\mu/ml$ (3) 수율 $\geq 90\%$ 5. 활성 백신(活疫苗) 생산에 사용되는 감독(减毒) 균종 또는 독종 및 그 선종(选育) 기술 (1) A형 간염 감독 활성 백신 생산 독종 (2) B형 뇌염 감독 활성 백신 생산 독종 6. 분리, 선별을 통해 획득한 공업화 생산조건을 갖춘 균종, 독종 및 그 선종 기술 (1) 유행성 출혈열(出血热) 불활성 백신 생산 독종 (들쥐형 및 집쥐형 포함) (2) 유전자공학적 방법으로 획득한 공업화 생산 조건을 갖추고 있는 생물 공학 균주, 세포 주 및 그 선종 기술 (1) B형 간염백신 생산에 사용되는 B형 간염 바이러스 - 중국 고퍼(地鼠) 난세포 재조합 세포주 (2) B형 간염 백신 생산에 사용되는 B형 간염 바이러스- 두묘(痘苗) 바이러스 재조합 두묘 독종 	<p>생물 기술 약물 생산 기술 (기술 요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분리, 선별을 통해 획득한 공업화 생산 조건을 갖춘 균종, 독종 및 그 선종 기술 (1) 유행성 출혈열(出血热) 불활성 백신 생산 독종 (들쥐형 및 집쥐형 포함) (2) 활성 백신(活疫苗) 생산에 사용되는 감독 균종 또는 독종 및 그 선종 기술 (1) A형간염감독활성백신생산독종 (2) B형뇌염감독활성백신생산독종 3. 유전자 공학적 방법으로 획득한 공업화 생산 조건을 갖추고 있는 균종, 독종 및 그 선종 기술 4. 엔테로바이러스 71(肠道病毒71型) 불활성 백신 5. 경구(口服) 로타바이러스(轮状病毒)활성 백신 6. EV71 백신용 독주(毒株) 7. CA16 백신용 독주 8. 오가(五价),육가(六价)로타바이러스백신 생산 핵심 공법 기술 9. 다당 단백질 결합 기술

	(3) 인터페론생산에 사용되는 생물 공학 균주 8. 사독 단일조분류응혈 효소(蛇毒单一组份类凝血酶)제조 공법 (1) 전기영동(电泳)의 단일조분류 응혈 효소검사 기술 (2) 단일조분 함량 100%	
06-27 03X	확합성 및 반합성 약물 생산 기술	
06-27 04X	천연 약물 생산 기술	
05-27 05X	중약 조제법 및 생산 기술	중약 조제법 및 생산 기술
06-27 06X	생물 활성을 띠는 기능성 고분자 재료 제조 및 가공 기술	
05-27 07X	조직공학 의료기 제품의 제조 및 가공 기술 (기술 요점) 1. 조직세포의 분리와 배양 기술 2. 조직세포 배양기의 조제 기술 3. 재료 스탠드의 가공 기술 4. 조직 공학 제품의 배양 가공 기술 5. 조직 공학 제품의 보존 기술	조직공학 의료기 제품의 제조 및 가공 기술 (기술 요점) 1. 조직세포의 분리와 배양 기술 2. 조직세포 배양기의 조제 기술 3. 재료 스탠드의 가공 기술 4. 조직 공학 제품의 배양 가공 기술 5. 조직 공학 제품의 보존 기술 6. 의료용 진단기계 및 설비 제조기술(국산 차세대 유전자 측정기, 제3세대 단분자 서열분석기 포함)
고무제품업		
05-29 01X	고무제품 생산 기술	고무제품 생산 기술
비금속광물제품업		
05-31 01X	일용 도자기 및 그 제품 생산 기술	일용 도자기 및 그 제품 생산 기술
05-31 02X	내화재료 생산 기술	내화재료 생산 기술
05-31 03X	무기 비금속 재료 생산 기술	무기 비금속 재료 생산 기술
05-31 04X	인공 결정체 성장 및 가공 기술	인공 결정체 성장 및 가공 기술 (기술 요점) 15. KBBF 결정체 성장 및 프리즘 결합기(棱镜耦合器件) 가공 기술
05-31 05X	폴리머 매트릭스 복합재료생산 기술	폴리머매트릭스복합재료생산기술

흑색금속 제련 및 압연 가공업		
05 32 01 X	강철 야금 기술	강철 야금 기술
유색금속 제련 및 압연 가공업		
05 33 01 X	유색금속 야금 기술	유색금속 야금 기술
05 33 02 X	비결정,미결정 금속 야금 기술	비결정, 미결정 금속 야금 기술
금속 제품업		
05 34 01 X	열처리 기술	열처리 기술
05 34 02 X	금속기복합재료생산 기술	금속기 복합재료 생산 기술
일반 설비 제조업		
05 35 01 X	주조기술	주조기술
05 35 02 X	일반 설비 제조 기술	일반설비 제조 기술
05 35 03 X	일반 부품 제조 기술	일반 부품 제조 기술
05 35 04 X	가스터빈 제조 기술	가스터빈 제조 기술
05 35 05 X	보일러 제조의 연소 기술	보일러 제조의 연소 기술
18 35 06 X		3D 프린팅 기술 (기술 요점) '주조·단조·절삭 일체형(铸锻铣一体化)' 금속 3D 프린팅 핵심 기술
18 35 07 X		공정기계(工程机械)의 응용 기술 (기술 요점) 로더, 불도저, 굴삭기 등 소음 저감, 지능 제어 등 연구개발 성과의 응용 기술
18 35 08 X		공작기계 산업 기초 공통 기술(机床产业基础共 性技术) (기술 요점) 공작기계의 혁신 설계,기초 공법,시험 검증,신 뢰성 및 기능 안전 등 공작기계 산업 기초 공통 기술 연구

전용 설비 제조업		
05 36 01 X	냉동 및 저온 공학 기술	냉동 및 저온 공학 기술
05 36 02 X	소방 기술	소방 기술
05 36 03 X	형사기술 (기술 요점) 1. 지문 자동 인식의알고리즘,처리 기술 2. 인체 사망 후 경과시간 측정 기술(人体死后 时间测试技术) (1) 튜블러(管状) 유통(流通) 조립식 화학 센서 제조 생산 공법 (2) 센서 전용의 시제(试剂) 조제법 3. 레이저 흔적 검측기술(激光痕检技术) (1) 공진 지동 조절 설계 기술(谐振腔自校准设 计技术) (2) 염료 레이저(染料激光器)설계 기술 4. 효소단일클론항체(酶标单克隆抗体)의 제조 기술	
05 36 04 X	의료용 진단기계 및 설비 제조 기술 (기술 요점) 4. 의료용센서제조기술 (1)호흡 산소 분압 센서(呼吸氧分压传感器)제 조기술 (2) 호흡 유량 센서(呼吸流量传感器) 제조기술 (3) 호흡률 및 호흡파 센서(呼吸率及呼吸波传 感器) 제조기술 (4) 호흡 압차센서(呼吸压差传感器) 제조 기술 (5) 인체 혈압 센서(人体血压传感器) 제조 기술 (6) 맥박수및 맥파(脉搏) 센서 제조 기술 (7) 심장기능(心功能) 센서 제조 기술 (8) 효소 면역 센서 제조 기술 (9) 생리학적 센서(生理传感器)의 설계 제조 공 법 및 측정 기술 (10) 디지털 캐패시턴스 미소 변위(微位移)(해 상도 $\geq 0.01\mu m$) 센서의 설계 제조 공법 및 측정 기술	
18 36 05 X		대형고속풍동(高速风洞) 설계건설기술 (기술 요점) 특수 기능 구조 설계, 온도범위(温域)가 넓은 특 수금속/복합재료성능분석, 대형복잡장비기능 제조및첨단측정 기술

18 36 06 X		대형진동플랫폼(振动平台)설계건설기술 (기술 요점) 쌍축 동시 진동 시험 플랫폼(双轴同步振动试验平台), 50톤전동진동 시험 시스템(50吨电动振动试验系统)
18 36 07 X		석유장비핵심부품설계제조기술 (기술 요점) 석유 장비 중 첨단 갭내 작업(井下作业)공구 및 소프트웨어, 오일과 가스 수집 및 운송 핵심 장비, TDS(Top Drive Drilling System, 顶驱), 분사기 헤드(注入头), 압축 열극(压裂痕), 액체 질소 펌프(液氮泵), 액체 질소 증발기등 채유정 완결(钻完井)핵심 부품의 설계 제조 기술
18 36 08 X		대형석유화학설비기초공법기술 (기술 요점) 대형 석화 및 탄화 공업 장치 반응기(装置反应器), 화로, 열 교환기, 구형 탱크 등 정지형 장치(静设备)의 재료 기술, 용접 기술, 열처리 기술, 가공기술및 검측 기술
18 36 09 X		중장비업계전략적신제품설계기술 (기술 요점) 중장비업계 전략적 신제품 설계 기술, 예를 들면 제3세대및 제4세대 원자력 발전 장비 및 재료 기술, 해양 공정 장비 기술 등
교통 운수 설비 제조업		
05 37 01 X	선박선형(船型) 설계및시험기술	선박선형(船型) 설계및시험기술
05 37 02 X	선박용설비제조기술	선박용설비제조기술
05 37 03 X	선박건조(造船) 공법	선박건조(造船) 공법
05 37 04 X	선용(船用)재료제조기술	선용(船用)재료제조기술
05 37 05 X	항공기설계및제조기술	항공기설계및제조기술
05 37 06 X	항공기부품제조및시험기술	항공기부품제조및시험기술
05 37 07 X	항공재료생산기술	항공재료생산기술

18 37 08 X		해상암초섬(海上島礁)의이용및안전보장장비기술 (기술 요점) 해상집법지휘관리배치시스템(海上執法指揮調度系統), 대형/초대형 부유식(浮式) 보장(保障)기지,극대형 해상 부유식 공해항구(空海港), 해상 위성발사센터,암초섬 중형 부유식 플랫폼, 원해(遠海) 암초섬 개발 건설 시공장치, 원해 통신 네트워크 시스템 지탱 플랫폼 등 장비 기술
18 37 09 X		항공, 우주비행베어링기술 (기술 요점) 로켓 엔진 베어링 기술, 사용수명이 긴(長壽命) 위성 베어링 기술
전기기계및기자재제조업		
05 39 01 X	전기공학재료생산기술	전기공학재료생산기술
05 39 02 X	전선,케이블제조기술	전선, 케이블제조기술
통신장비, 컴퓨터및기타전자설비제조업		
05 40 01 X	전자부품제조기술	전자부품제조기술
05 40 02 X	반도체소자 제조 기술	반도체소자 제조 기술
05 40 03 X	센서제조기술	센서제조기술
05 40 04 X	극초단파기술	극초단파기술
05 40 05 X	광섬유제조및광섬유통신기술	광섬유제조및광섬유통신기술
05 40 06 X	컴퓨터하드웨어및주변장치제조기술	컴퓨터하드웨어및주변장치제조기술
05 40 07 X	무선통신기술	무선통신기술
05 40 08 X	로봇제조기술	로봇제조기술
05 40 09 X	계량기준,표준제조및양의값(量值) 전달기술	계량기준,표준제조및양의값(量值) 전달기술
05 40 10 X	공간재료생산기술	공간재료생산기술

05 40 11 X	공간 기기 및 설비 제조 기술 (기술 요점) 채널수(通道数) 150의원격영상분광측정기(遙感成像光谱仪) 제조기술	공간기기 및설비제조기술 (기술 요점) 1. 채널수(通道数) > 500의원격영상분광측정기 제조기술 2. 공간환경전용부품설계및공법,평가방법및설비,공간윤활방법(空间润滑方法) 및윤활부품(润滑件) 3. 고해상도합성개구 레이더기술의전체기술방안및주요기술지표 4. 고해상도가시광선, 적외선영상기술의전체방안및지표 5. 밀리파,서브밀리파우주공간목표탐측기술(毫米波、亚毫米波天基空间目标探测技术)의전체방안및지표
18 40 12 X		드론기술 (기술 요점) 1. 다른등급의고정익과회전익드론중의미소형(微型) 임무탑재, 자율운항, 자율적응제어(自适应控制),감지와회피, 고신뢰도(高可靠) 통신, 내항성및공역관리등핵심기술 2. 드론제조에관련된관성측정장치, 경사각센서,대기모니터링센서(大气监测传感器),전류센서,자기센서,엔진유량(发动机流量) 센서 등유형의센서의핵심기술 3. 전자파 간섭 방사선총(电磁干扰射线枪) 등안티드론기술
18 40 13 X		레이저 기술 (기술 요점) 자체개발한KBBF 단결정을이용한심자외(深紫外)고체레이저제조기술의핵심기술
계측기및문화, 사무용기계제조업		
05 41 01 X	열역학량(热工量) 측정 계측기 제조 기술	열역학량(热工量) 측정 계측기 제조 기술
05 41 02 X	기계량(机械量) 측정 계측기 제조기술	기계량(机械量) 측정 계측기 제조 기술
05 41 03 X	비파괴검사기술	비파괴검사기술
05 41 04 X	재료시험기및장비제조기술	재료시험기및장비제조기술
05 41 05 X	계시기구제조기술	계시기구제조기술
05 41 06 X	정밀기계제조기술	정밀기계제조기술

05 41 07 X	지도제작기술 <기술 요점> 중국지리정보시스템의핵심알고리즘과시스템 중비례척) 1:100만인지형및지리좌표데이터	지도제작기술 <기술 요점> 직접 출력 비례척) = 1:10만인 지형 요소 응용 기술
05 41 08 X	지진관측기생산기술	지진관측기생산기술
05 41 09 X	유리및비결정 무기 비금속재료생산기술	유리및비결정 무기 비금속재료생산기술
공예품및기타제조업		
05 42 01 X	공예품제조기술	공예품제조기술
05 42 02 X	문물보호및복원기술	문물보호및복원기술
05 42 03 X	문물복제기술	문물복제기술
05 42 04 X	대형청동기복제기술	대형청동기복제기술
건축 장식업		
05 49 01 X	중국전통건축기술	중국전통건축기술
기타건축업		
05 50 01 X	건축적 환경 제어 기술	건축적 환경 제어 기술
수상운송업		
05 54 01 X	항구설비 제조 기술	항구설비 제조 기술
05 54 02 X	액상화물운송기술	액상화물운송기술
전력, 열에너지의생산및공급업		
18 44 01 X		대형전력설비설계기술 <기술 요점> 석탄 청결 고효율 이용 및 원활한운용 기술, 대 형 수력 발전 유닛(机组) 설계 기술, 제3세대 원 자력 발전 유닛 설계 기술, 초고압 교직류 송변 전 세트장비(特高压交直流输电变电成套装备) 설 계 등 핵심 기술
전기통신및기타정보전송서비스업		

05 60 01 X	통신전송기술	통신전송기술
05 60 02 X	컴퓨터네트워크기술	컴퓨터네트워크기술
05 60 03 X	공간데이터전송기술 (기술 요점) 1. L 주파수대휴대용, 효율66%, 폴딩형, 우산형 포물면(傘狀拋物面) 안테나의설계및생산공법 2. Ku 주파수대평면(平面) 안테나용의소모가 10-40이하인매질(介質) 재료생산기술 3. 기상지(기상地)간실시간데이터전송의코드 및압축기술	
05 60 04 X	위성응용기술 (기술 요점) 1. 다음중하나와 관련되는쌍성항법위치시스 템 (1)도착신호(入站信號) 실시간포착유닛(捕獲單 元)의신호형식, 부품구조및제조공법 (2) 출발신호(出站信號) 궤속포착유닛의신호포 착방법, 전로구조및전송칩 (3)시스템의정보전송체제, 변조(調制) 방식, 프 레임구조 2. 그래픽궤속처리방법및소프트웨어	위성응용기술 (기술 요점) 1. 다음중하나와 관련되는베이더우 위성 항법 위치시스템 (1)도착신호(入站信號) 실시간포착유닛(捕獲單 元)의신호단위형식, 부품구조및제조공정 (2) 출발신호(出站信號) 궤속포착유닛의신호포 착방법, 전로구조및전송칩 (3)시스템의정보전송체제, 조제방식, 프레임구조
컴퓨터서비스업		
05 61 01 X	정보처리기술	정보처리기술 (기술 요점) 17. 음성합성기술 (말뭉치설계, 녹음제작및표시 기술, 음성신호특성분석및추출기술, 텍스트특성 분석및예측기술, 음성특성확률통계모형구축기 술등포함) 18. 인공지능인터페이스기술(음성인식기술, 마 이크로폰어레이기술, 음성소환기술, 인터랙션 기술등포함) 19. 음성평가기술(낭독자동채점기술, 구술 표현 자동채점기술, 잘못된 발음검출기술등포함) 20. 스마트채점기술(인쇄체스캐닝인식기술, 필 기체스캐닝인식기술, 인쇄체사진인식기술, 필기 체사진인식기술, 중영문작문정정기술등포함) 21. 데이터분석에기반한맞춤형정보부서서비스 기술
05 61 02 X	컴퓨터응용기술	컴퓨터응용기술

18 61 03 X		<p>암호안전기술 (기술 요점)</p> <p>1. 암호칩설계및구현기술(고속암호알고리즘, 병행(并行)암호화기술, 암호칩의안전설계기술, 소프트웨어온칩(SOC) 설계및구현기술, 고속알고리즘표준에기반한고속칩구현기술)</p> <p>2. 양자암호기술 (양자암호구현방법, 양자암호의 전송기술, 양자암호네트워크, 양자암호공학구현기술)</p>
18 61 04 X		<p>고성능감사기술 (기술 요점)</p> <p>1. 고속인터넷환경에서의심층패킷분석기술</p> <p>2. 미지의공격행위의획득및분석기술</p> <p>3. 대규모정보수집과분석에의한전략조기경보기술</p> <p>4. 사이버조기경보연동반응기술</p> <p>5. APT 공격검출기술</p> <p>6. 위협정보생성기술</p>
18 61 05 X		<p>정보방어기술 (기술 요점)</p> <p>1. 정보은닉및발견기술</p> <p>2. 정보분석및모니터링기술</p> <p>3. 시스템및데이터의신속회복기술</p> <p>4. 신뢰컴퓨팅기술</p>
18 61 06 X		<p>정보대항기술 (기술 요점)</p> <p>1. 유량(流量) 포착(捕獲) 및분석기술</p> <p>2. 취약점의발견및발굴기술</p> <p>3. 악성코드작성및삽입기술</p> <p>4. 정보위장기술</p> <p>5. 사이버공격근원추적(追跡溯源) 기술</p>
소프트웨어업		
05 62 01 X	컴퓨터공동소프트웨어프로그래밍기술	컴퓨터공동소프트웨어프로그래밍기술
05 62 02 X	정보보안방화벽소프트웨어기술	
18 62 03 X		<p>기본소프트웨어보안강화기술 (기술 요점)</p> <p>1. 운용시스템보안강화기술: <운용시스템보안기술요구> (GB/T 20272-2006) 4급(포함)이상 의기술요구</p> <p>2. 데이터베이스시스템보안강화기술: <데이터베이스시스템보안기술요구> (GB/T 20273-2006) 4급(포함)이상 의기술요구</p>

전문기술서비스업		
05 76 01 X	해양환경시물레이션기술	해양환경시물레이션기술
05 76 02 X	대지측량기술	대지측량기술
05 76 03 X	정밀공학측량기술	정밀공학측량기술
05 76 04 X	진공기술 (기술 요점) 진공도 <10 ⁻⁹ mPa의초고진공획득기술	진공도 <10 ⁻⁹ mPa의초고진공획득기술
05 76 05 X	음향학공학기술	음향학공학기술
05 76 06 X	측정테스트기술	측정테스트기술
05 76 07 X	객체탐지및인식기술	객체탐지및인식기술
18 76 08 X		우주비행원격영상(影像)획득기술 (기술 요점) 우주 비행 원격 센서 시물레이션(지면, 항공)기술, 원격 데이터 코딩 기술을 포함한 우주비행원격 센서기술
지질 탐사업		
05 78 01 X	지구물리학적 탐사 기술	지구물리학적 탐사 기술
보건		
05 85 01 X	중의 의료 기술	중의 의료 기술

3. 외상투자 안전심사방법

(2021.1.18 일 시행,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령)

제1조 전면적 개방의 새로운 구도를 형성하고자 하는 필요에 부응하고 외국 투자를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동시에 국가 안전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예방 및 완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법〉 및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국가 안전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투자인 경우,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안전심사를 진행한다.

본 방법에서 지칭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이하 '경내')에서 진행되는 투자활동을 의미하며 아래의 경우를 포함한다.

(1) 외국인투자자가 단독 또는 기타 투자자와 공동으로 경내에 신설 프로젝트 투자 또는 기업 신설

(2) 외국인투자자가 인수합병 방식으로 경내기업의 지분 또는 자산 취득

(3) 외국인투자자가 기타 방식으로 경내에 투자

제3조 국가는 외국인투자 안전심사 업무기구(이하 "업무기구")를 구축하고 외국인투자 안전심사 업무를 조직, 협조, 지도하는 책임을 진다.

업무기구의 사무실을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설치하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가 주도하여 외국인투자 안전심사의 일상 업무를 담당한다.

제4조 아래 범위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의 경우, 외국인투자자 또는 경내 관련 당사자(이하 통칭하여 "당사자")가 투자 실행 전에 주동적으로 의사무실에 신고해야 한다.

(1) 군수산업 및 그부대산업 등 국가의 방위 안전과 관련된 영역에 투자할 경우, 또는 군사시설 또는 군수산업시설 주변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2) 국가의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농산물, 중요한 에너지 및 자원, 중대한 장비 제조, 중요한 인프라, 중요한 운송서비스, 중요한 문화제품 및 서비스, 중요

한 정보기술 및 인터넷 제품과 서비스, 중요한 금융서비스, 핵심기술 및 기타 중요한 분야에 투자하여 대상기업의 실제지배권을 취득하는 경우

위 제(2)항에서 지칭한 대상기업의 실제지배권 취득은 아래의 경우를 포함한다.

(1) 외국투자자가 대상기업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경우

(2) 외국투자자가 보유한 대상기업의 지분이 50% 미만이나 그가 보유한 의결권이 동사회, 주주회의 또는 주주대회의 결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3) 외국투자자가 대상기업의 경영 의사결정, 인사, 재무, 기술 등 방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경우

본 조 제1항에서 정한 범위(이하 “신고범위”)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자의 경우, 업무기구사무실이 당사자에게 신고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제5조 당사자는 업무기구사무실에 외국인투자를 신고하기 전에, 유관 문제를 업무기구사무실에 자문할 수 있다.

제6조 당사자가 업무기구 사무실에 외국인투자를 신고할 때 아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서

(2) 투자방안

(3) 외국인투자자가 국가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설명

(4) 업무기구사무실이 정한 기타 자료

신청서에는 외국투자자의 명칭, 주소, 경영범위, 투자의 기본상황 및 업무기구사무실이 정한 기타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사무실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관련 부서에 본 조 제1항에서 정한 자료를 대리 수취하거나 이송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제7조 업무기구사무실은 당사자가 제출하거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관련 부서가 이송한 본 방법 제6조 규정에 부합하는 자료를 수취한 날로부터 15개 영업일 내에 신고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안전심사 진행 필요여부에 대

한 결정을 내리고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업무기구사무실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는 투자를 실행할 수 없다.

업무기구 사무실이 안전심사 진행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하는 경우, 당사자는 투자를 실행할 수 있다.

제8조 외국인투자 안전심사는 일반심사와 특별심사로 구분된다. 업무기구 사무실이 신고된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전심사 진행을 결정하는 경우, 결정일로부터 30영업일 내에 일반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심사기간 동안, 당사자는 투자를 실행할 수 없다.

일반심사를 통해 신고된 외국인투자가 국가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무기구사무실은 안전심사 통과 결정을 내린다. 국가안전에 영향을 미치지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무기구사무실은 특별심사 개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업무기구사무실의 결정은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9조 업무기구 사무실이 신고된 외국인투자에 대한 특별심사를 개시하는 경우, 심사 후 다음 규정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신고된 외국인투자가 국가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안전심사 통과 결정을 내린다.

(2) 신고된 외국인투자가 국가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투자 금지 결정을 내리고; 조건부로 국가 안전에 대한 영향을 제거할 수 있고 당사자가 조건부 내용을 접수한다고 확약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안전심사 통과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조건부 내용을 명시할 수 있다.

특별심사는 개시일로부터 60영업일 내에 완료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인 경우에는 심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심사기한 연장은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심사기간 동안 당사자는 투자를 실행할 수 없다.

제10조 업무기구 사무실이 신고된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전심사를 진행하는 기간 동안, 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에 대한 추가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당사자에게 관련 상황을 질의할 수 있다. 당사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당사자가 자료를 추가 제공하는 기간은 심사기한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11조 업무기구 사무실이 신고된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전 심사를 진행하는 기간 동안, 당사자는 투자방안을 수정하거나 투자를 회수할 수 있다.

당사자가 투자방안을 수정하는 경우, 업무기구 사무실이 수정된 투자방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심사기한을 다시 계산한다. 당사자가 투자를 철회하는 경우, 업무기구 사무실은 심사를 중지한다.

제12조 업무기구 사무실이 신고된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전심사 통과 결정을 내리는 경우, 당사자는 투자를 실행할 수 있다. 투자금지 결정을 내리는 경우, 당사자는 투자를 실행할 수 없고, 이미 실행한 경우에는 기한 내에 지분 또는 자산을 처분해야 하며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 투자 실행 전의 상태로 복구하여 국가 안전에 대한 영향을 제거해야 한다. 조건부 안전심사 통과 결정을 내리는 경우, 당사자는 조건부 내용에 따라 투자를 실행해야 한다.

제13조 외국인투자 안전심사 결정은 업무기구 사무실이 관련 부서, 지방 인민정부와 함께 감독 실시한다. 조건부로 안전심사에 통과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관련 증명자료 제출 요구, 현장검사 등 방법을 통해 조건부 실행 상황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업무기구 사무실이 신고된 외국인투자에 대해 안전심사 진행 불필요 결정을 내리거나 안전심사 통과 결정을 내린 후, 당사자가 투자방안을 변경하고 국가 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업무기구 사무실에 다시 신고해야 한다.

제15조 관련 기관, 기업, 사회단체, 사회대중 등이 외국인투자가 국가 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업무기구 사무실에 안전심사 진행을 제안할 수 있다.

제16조 신고범위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당사자가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 업무기구 사무실이 기한 내에 신고하도록 명령한다.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기한 내에 지분 또는 자산을 처분하고 또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 투자 실행 전의 상태로 복구하여 국가 안전에 대한 영향을 제거하도록 명령한다.

제17조 당사자가 업무기구 사무실에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관련 정보를 은닉하는 경우, 업무기구 사무실이 책임지고 시정을 명령한다. 허위자료를 제공하거나 관련 정보를 은닉하여 안전심사에 통과한 경우 관련 결정을 취소한다. 이미 투자가 실행된 경우에는 기한 내에 지분 또는 자산을 처분하고 또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 투자 실행 전의 상태로 복구하여 국가 안전에 대한 영향을 제거하도록 명령한다.

제18조 안전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한 외국인투자에 대해 당사자가 조건부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 업무기구 사무실이 책임지고 시정을 명령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기한 내에 지분 또는 자산을 처분하고 기타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여 투자 실행 전의 상태로 복구하여 국가 안전에 대한 영향을 제거하도록 명령한다.

제19조 당사자가 본 방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에 규정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불량신용기록으로 국가 관련 신용정보시스템에 기록해야 하며,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공동 징계를 실시해야 한다.

제20조 국가기관공작인원이 외국인투자 안전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 직무유기, 부정부패, 국가비밀 또는 그가 지득한 상업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1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지역 투자자의투자가 국가 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본 방법의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22조 외국투자자가 증권거래소 또는 국무원이 비준한 기타 증권거래장소를 통해 경내기업의 주식을 매입하여 국가 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본 방법을 적용한 구체방법을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서 업무기구 사무실과 공동으로 제정한다.

제23조 본 방법은 발표일로부터 30일 후에 시행한다.

4.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 규정 (2020.9.19 시행, 상무부령)

제1조 국가주권, 안전, 발전이익을 수호하고, 공평하고 자유로운 국제경제무역 질서를 수호하고, 중국기업, 기타 조직 또는 개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보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국가는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 제도를 수립하여 외국 실체가 국제경제무역 및 관련 활동 중 다음의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

(1) 중국의 국가주권, 안전, 발전이익을 해치는 행위

(2) 정상적인 시장 거래 원칙을 위반하여 중국기업, 기타 조직 또는 개인과의 정상적인 거래를 중단하거나 차별적인 대우를 하여 중국기업, 조직 또는 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

본 규정에서 말하는 외국실체는 외국기업, 기타 조직 또는 개인을 포함한다.

제3조 중국정부는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대외정책을 고수하며, 상호 주권 존중, 내정 불간섭, 평등호혜 등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을 고수하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를 반대하며, 국가의 핵심이익을 단호히 수호하고, 다자무역체제를 수호하며, 개방형 세계경제를 추진한다.

제4조 국가는 중앙국가기관 유관부서가 참가하는 업무기구(이하 ‘업무기구’라고 함)를 설치하여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 제도의 실행을 담당하도록 한다. 업무기구 사무실은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상무부)에 설치한다.

제5조 업무기구는 직권 또는 관련자의 건의 및 신고에 따라 해당 외국실체에 대한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며 조사를 개시할 경우에는 공고를 한다.

제6조 업무기구는 해당 외국실체의 행위에 대해 당사자 조사, 문건 및 자료 열람 또는 복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사 기간 동안 해당 외국기업은 진술, 변호할 수 있다.

업무기구는 실제 상황에 따라 조사 중단 또는 종결을 결정할 수 있고, 조사 중단 결정에 근거한 사실이 중대한 변화를 일으킬 경우 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제7조 업무기구는 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외국실체를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에 등재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공고한다.

- (1) 중국 국가주권, 안전, 발전이익에 대한 침해 정도
- (2) 중국 기업, 기타 조직 또는 개인의 합법적인 권익에 대한 침해 정도
- (3) 국제 경제무역 규범에 부합 여부
- (4) 기타 고려해야 할 요소

제8조 해당 외국실체의 행위가 명백할 경우에는, 업무기구는 직접적으로 본 규정 제7조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를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에 등재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등재할 경우에는 공고를 해야 한다.

제9조 해당 외국실체를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에 등재한다는 공고에는 해당 외국 실체와의 교역에 대한 위험성을 제시할 수 있고,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해당 외국실체의 행위에 대해 시정 기한을 명시할 수 있다.

제10조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에 등재된 외국실체에 대하여 업무기구는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다음 중 하나 혹은 다수의 조치(이하 ‘처리조치’라고 함)를 취하여 공고할 수 있다.

- (1) 중국과의 수출입 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한다
- (2) 중국 경내 투자를 제한하거나 금지한다
- (3) 관련 인원, 교통수단 등의 중국 입국을 제한하거나 금지한다
- (4) 관련 인원의 중국내 취업 허가, 체류, 거주 등 자격을 제한하거나 취소한다
- (5) 사안의 경중에 따라 상응하는 위법경영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6) 기타 필요한 조치

전항에서 규정하는 처리조치는 관련 부서에서 역할 분담에 따라 실시하며, 기타 관계 기관과 개인은 실시를 협조해야 한다.

제11조 해당 외국실체를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에 등재한 공고에 해당 외국실체의 시정기한을 명시한 경우, 기간 내에 본 규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처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해당 외국실체가 해당 행위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본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조치를 취한다.

제12조 해당 외국실체의 중국과 관련된 수출입 활동이 제한을 받거나 금지된 경우, 중국기업, 기타 조직 또는 개인이 특수한 상황에서 해당 외국실체와 거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업무기구에 신청하여 동의를 얻으면 해당 외국실체와 필요한 거래를 할 수 있다.

제13조 업무기구는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해당 외국실체를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에서 제외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 해당 외국실체가 공고에 명시된 시정기간 내에 문제행위를 시정하고 조치를 취하여 해당 행위의 부정적 영향을 해소했을 경우, 업무기구는 결정하여 명단에서 제외해야 한다.

명단에 포함된 외국 실체는 담당기관에 명단 제의를 신청할 수 있고 업무기구는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제외 여부를 결정한다.

해당 외국실체를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면 이를 공고해야 하며, 공고한 날로부터 본 규정 제10조에 따른 처벌을 중지한다.

제14조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외국 법률과 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저지 방법

(2021.1.9 시행, 상무부령)

제1조 외국 법률과 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의 중국에 대한 영향을 저지하고, 국가 주권, 안전, 발전이익을 수호하며, 중국 국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은 외국 법률과 조치의 역외적용이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원칙에 위반하여, 중국 국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과 제3국(지역) 및 그 국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진행되는 정상적인 경제무역 및 관련 활동을 부당하게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제3조 중국 정부는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대외정책을 견지하고, 상호 주권 존중, 상호 내정 불간섭과 평등호혜 등 국제관계 기본 원칙을 견지하며, 체결한 국제 조약, 협정을 준수하고, 부담해야 하는 국제의무를 부담한다.

제4조 국가는 중앙국가기관 유관부문이 참가하는 업무기구(이하 ‘업무기구’라고 함)를 설치하여, 외국 법률과 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의 대응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업무기구는 국무원 상무(商務) 주관 부서가 주도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 발전개혁 부서가 기타 관련 부서와 함께 담당한다.

제5조 중국 국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외국 법률과 조치가 제3국(지역) 및 그 국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과의 정상적인 경제무역 및 관련 활동을 금지 또는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30일내에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에 관련 상황을 사실대로 보고해야 한다. 보고인이 비밀 유지를 요구하면,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 및 그 직원은 반드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6조 관련 외국 법률과 조치에 부당한 역외적용 상황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업무기구가 아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고 확인한다.

- (1)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원칙 위반 여부
- (2) 중국 국가 주권, 안전, 발전이익에 대해 영향을 끼칠 가능성

(3) 중국 국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이익에 대해 영향을 끼칠 가능성

(4) 기타 고려해야 하는 요소

제7조 ① 업무기구가 평가를 거쳐 유관 외국 법률과 조치가 부당하게 역외적 용을 한 정황이 확인되면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가 관련 외국 법률과 조치를 승인, 집행, 준수하면 아니 된다는 금지령 발표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업무기구는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금지령 중지 또는 철회를 결정할 수 있다.

제8조 ① 중국 국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에 금지령 준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지령 준수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반드시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에 서면 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서면 신청에는 반드시 면제 신청의 이유 및 면제 신청의 범위 등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는 신청을 수리한 날부터 30일 내에 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상황이 긴급한 경우에는 즉시 결정해야 한다.

제9조 ① 당사자가 금지령 범위 내의 외국 법률과 조치를 준수하여, 중국 국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면, 중국 국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당사자에게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단, 당사자가 본 방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면제를 획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금지령 범위 내의 외국 법률에 근거하여 내린 판결, 재정(裁定)이 중국 국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중국 국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판결, 재정으로 이익을 취득한 당사자에게 손실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본 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하는 당사자가 인민법원이 발효한 판결, 재정 이행을 거절하면, 중국 국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 업무기구의 구성원 단위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중국 국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외국 법률과 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대응을 위해 지도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11조 중국 국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금지령에 근거하여, 관련 외국 법률과 조치를 준수하지 않아 중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정부 관련 부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외국 법률과 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에 대해 중국 정부는 실제 상황과 필요에 따라 필요한 대응(反制)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 중국 국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규정에 따라 관련 상황을 사실대로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금지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는 경고하고,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또한 상황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에 처할 수도 있다.

제14조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 직원이 규정에 따라 관련 상황을 보고한 중국 국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위해 비밀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법에 따라 처분한다. 범죄가 성립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15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 또는 가입한 국제조약, 협정이 규정하는 외국 법률과 조치의 역외적용 상황은 본 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6조 본 방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발간총괄**

유복근(주중한국대사관 경제공사)

■ **발간책임**

윤경원(법무협력관, 부장검사)

■ **집필**

윤경원(법무협력관, 부장검사)

박선영(주중한국대사관 경제담당 1등서기관)

김기열(주중한국대사관 상무관보)

법무법인(유한)태평양 북경대표처 권대식 변호사

■ **발간위원**

손성연(주중한국대사관 경제담당 공사참사관)

진종욱(주중한국대사관 상무관)

정희남(주중한국대사관 선임연구원)

■ **감수위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통상지원센터 이원석 차장

■ **발행일** 2021년 5월

■ **발행처** 주중대한민국대사관 경제과 [비매품]

■ **발간등록번호**

■ **제작 / 편집** 북경부경한광고유한공사

■ **디자인 / 인쇄** 북경애듀니셜계유한공사

■ 본 책자의 내용은 중국에서 최근 발표한 법령을 기초로 작성한 일반적인 해설서로, 주중대한민국대사관은 이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통상규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문제는 해당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관련부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책자는 주중한국대사관에서 발행하여 기업과 개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